第269回國會
(定期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1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11月21日(水)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7.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8.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9.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계속)
10.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12.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3.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5.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연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2.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우주손해배상법안

34.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3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3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계속)
37. 農業・農村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8. 식품산업진흥법안
39.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
4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41. 農藥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公有水面埋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49.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
5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6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3.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6.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1.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
72.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73.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74.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
75.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7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9.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91.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92. 학교도서관진흥법안
93.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94.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9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9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01. 島嶼・僻地敎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10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106.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108.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9.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0.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1.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2.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8.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9.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5.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6.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7.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8.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9.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
130.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1.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
132.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133.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
134.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
135.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
136.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
137.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38.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9.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0.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1.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2.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3.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
144.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
145. 赦免法 전부개정법률안
146.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7. 非訟事件節次法 일부개정법률안
1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1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
1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民法 일부개정법률안
154. 民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6.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8. 刑事訴訟法 一部改正法律案(계속)
159.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계속)
162.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계속)
163.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4.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계속)

165.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6.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7.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8. 出入國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계속)
169.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1.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2. 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173.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4.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5.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계속)
176.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계속)
177.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계속)
17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0.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1.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82.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3.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18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87.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18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
192.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
193.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
194.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
195.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
196. 인신보호법안(계속)
197. 건축기본법안
1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201.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 商法 일부개정법률안
203. 인권교육진흥법안
204.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20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206.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7.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

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審査된案件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9
206.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천영세·김영춘 의원 외 148인 발의) ····· 20
207.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의원 외 128인 발의) ····· 2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정부 제출) ····· 23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23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계속) ····· 23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계속) ····· 23
7.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계속) ····· 23
8.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엄호성·윤건영·이인기·정병국·심재철·김재경·안상수·유정복·공성진·나경원·김애실·박계동·김재원·김문수·배일도 의원 발의)(계속) ····· 23
9.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23
10.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 25
11.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12.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13.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25
15.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 의원 발의)(계속) ····· 25
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5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재윤·유재건·박상돈·심재덕·한광원·이인기·노현송·이계경·변재일·이종걸·최성 의원 발의) ····· 25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6
1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6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재홍·이낙연·엄호성·안상수·김선미·조승수·황우여·배기선·이해봉·신기남·정성호·허태열·김충환·진수희·조성래 의원 발의) ····· 26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6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6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6
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28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28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28
27. 연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28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8

29.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계속) ····· 28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28
32.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8
33. 우주손해배상법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홍창선・정갑윤・김명자・최규성・이경숙・이은영・이종걸・정문헌・이낙연・변재일・윤원호・강성종 의원 발의) ····· 28
34.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민 의원 외 23인 발의)(계속) ····· 28
3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창일・강혜숙・구논회・권선택・김교흥・김낙성・김덕규・김덕룡・김명자・김무성・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성조・김영선・김영주・김우남・김재윤・김재홍・김정훈・김종률・김종인・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형주・김홍일・김효석・김희선・나경원・노영민・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안민석・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인태・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두・이강래・이경숙・이계경・이계안・이계진・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열・이시종・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정일・이종걸・이혜훈・이화영・임종인・임채정・임태희・장경수・장복심・장영달・전병헌・전여옥・정갑윤・정성호・정청래・조배숙・지병문・진수희・채수찬・최성・최규성・최규식・최연희・최인기・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 ····· 28
3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대안)(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계속) ····· 29
37. 農業・農村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38. 식품산업진흥법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김우남・김광원・김형오・최규성・이강두・홍문표・한광원・신중식・김낙성 의원 발의) ····· 36
39.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4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41. 農藥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김영덕・우윤근・신중식・김우남・한광원・이계진・이강두・김재원・김광원・홍문표・김홍업・강기갑 의원 발의) ····· 36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최성・김정권・오제세・채일병・이시종・이영호・김홍업・홍문표・최인기・우윤근・노영민・이인기・김영덕・한광원・김효석・이용희・조일현・김태홍・김낙순・최규성・김광원・김우남・이방호・이낙연・조경태・서갑원・김송자・김명주・강기갑・유선호・박명광 의원 발의) ····· 36
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명광・송영길・문병호・홍미영・윤원호・최규성・서혜석・유승희・정청래・박영선・심재덕・김덕규・이석현・노영민・이시종・조정식・김재윤・서갑원 의원 발의) ····· 36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4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46. 公有水面埋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48.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정부 제출) ····· 42
49.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정부 제출) ····· 42
5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8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8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미경・천영세・박성범・류근찬・한광원・장복심・정종복・김덕규・노현송・이계진・정청래・노웅래・이광재・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권영길・우상호・박찬숙・강혜숙・김재윤・서재관・이광철・윤호중・강기정・김태홍・신기남・문병호・조정식・이낙연・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재건・변재일・우윤근・김낙순・염동연・조일현・이근식・강봉균・최용규・이종걸・장경수・양형일・우제창・우원식・진수희・김영주・노회찬・최순영・단병호・우제항・이강래・제종길・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 ····· 48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52
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52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52
5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52
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52
6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52
6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52
62.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유기준・유승민・고진화・배일도・이계경・엄호성・정문헌・김정훈・최경환 의원 발의) ····· 52
63.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김명자・김영주・김춘진・민병두・우윤근・이계안・이미경・이영호・정의용・최재천 의원 발의) ····· 52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종걸・이광철・송영길・김태년・변재일・이미경・박상돈・고희선・강길부 의원 발의) ····· 52
6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명주・김석준・김양수・김재경・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 의원 발의) ····· 58
66.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 58
6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 58
68.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 58
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 58
7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 58
71.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영세・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 58
72.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주호・진수희・한선교 의원 발의) ····· 58
73.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군현・한선교 의원 발의) ····· 58
74.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권철현・김석준・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인기・이주호・진수희 의원 발의) ····· 58

75.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이성권・곽성문・차명진・이주호・한선교・최구식・엄호성・이재오・박형준 의원 발의) ····· 58
7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강창일・양형일・제종길・홍미영・안홍준・윤원호・이목희・우원식・장향숙・배일도 의원 발의) ····· 61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7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8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8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8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8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8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8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8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유재건・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 64
89.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65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91.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92.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우남・안상수・안민석・김현미・김영춘・정청래・백원우・문석호・박상돈・이미경・강혜숙・김원웅・김낙순 의원 발의) ····· 67
93.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광철・강창일・민병두・정봉주・안민석・김태년・최순영・이인영・김희선・이인제・서갑원・김낙성・곽성문・김송자・문희상・유재건・박상돈・최규성・김교흥・김영숙・이경숙・문학진・최재성・이미경・정병국・제종길・이계경・유필우・김용갑・이계진・엄호성・김학송・이재오・전병헌・이낙연・김원기・김근태・손봉숙・강기갑・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이영순 의원 발의) ····· 67
94.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67
9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67
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9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98. 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9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100.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101. 島嶼・僻地敎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10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1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104.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10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9

106.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문석호・안영근・염동연・유인태・강혜숙・김현미・정청래・서재관・신학용・양승조・전병헌・최철국・김교흥・박기춘・장경수・노웅래・이경숙・이은영・이근식・민병두・이상민・임종인・노회찬・박세환・나경원・유재건・장복심・송영길・우제창・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 79
107.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9
108.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9
109.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엄호성・이주호・박성범・진수희・김영숙・허태열・박세환・한화갑・권영세・이인기・류근찬・이혜훈・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 79
110.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제종길・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 79
111.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112.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정병국・이혜훈・한선교・안홍준・정종복・최구식・박승환・이군현・서상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박형준・임인배・이계진・박찬숙・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계속) ····· 80
1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 의원 발의) ····· 80
1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115.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82
1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 ····· 82
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권선택・김동철・김재윤・노영민・문병호・민병두・선병렬・우원식・유선호・유승희・임종인・제종길・최재천・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 82
118.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구논회・장향숙・김선미・김교흥・강기정・신학용・김춘진・김동철・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82
119.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안상수・김재원・이강두・이계경・임인배・안홍준・김정훈・권경석・김학송・엄호성・배일도・황우여・이재웅 의원 발의) ····· 82
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동철・류근찬・김낙순・변재일・이석현・윤호중・김선미・이승희・김영주 의원 발의) ····· 82
1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김양수・이계경・정문헌・황우여・유승민・황진하・곽성문・안택수・신상진・김명주・이원복・정두언・이재창・김재원・정의화・김정권・이강두・배일도・이경재・정갑윤・박순자・김영숙・안홍준・제종길 의원 발의) 82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이경재・선병렬・김영주・김덕규・김재윤・김태년・이은영・이영호・정봉주・노영민 의원 발의) ····· 82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김재홍・김우남・정동채・이강두・정종복・김명주・이계경・이성구・배일도・박세환・서병수・이인기・김태년・이경재・황우여・신상진・주성영・박상돈・박재완・백원우・정성호・박찬숙・서재관・이계진・임해규 의원 발의)(계속) ····· 82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125.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김현미・심재덕・유승민・이재오・고조홍・안병엽・박재완・심재철・안상수・이시종・손봉숙・배일도・김원웅・이상경・신학용・박상돈・오제세・노현송・엄호성・서재관 의원 발의)(계속) ····· 82
126.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윤호중・최성・박상돈・변재일・이해봉・이영호・이상민・김종률・이인기・서재관・황우여・안상수・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82
127.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석준・박계동・이성구・이상배・이성권・최철국・차명진・심재덕・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82
128.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선병렬・김종률・오영식・노영민・우윤근・한병도・제종길・한광원・임종석・조경태・김혁규・신학용・윤원호 의원 발의)(계속) ··· 82
129.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2
130.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131.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2
132.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2
133.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이계경・박형준・권철현・김양수・김명주・정진석・남경필・정화원 의원 발의) ····· 82
134.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박세환・안명옥・강혜숙・정동채・엄호성・이해봉・이낙연・노현송・심재철・이광철・황우여・박상돈・최순영・이재오・정화원・김춘진・임종인・이계경・강기정・홍미영・이상열 의원 발의) ····· 82
135.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 ····· 82
136.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기현・이해봉・신상진・이인기・박상돈・정성호・박재완・정의화・김학송・최구식・이명규 의원 발의) ····· 82
137.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83
138.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이주호・안홍준・박승환・김석준・남경필・권철현・김명주・권영세・박형준・원희룡・이계경・정병국・정문헌・김병호 의원 발의)(계속) ····· 83
139.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권영길・강기갑・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83
140.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재경・김재원・장윤석・박재완・김충환・전여옥・안상수・심재엽・허천・신상진・김용갑・박찬숙 의원 발의)(계속) ····· 83
141.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영선・김태환・김홍일・박재완・손봉숙・이상열・이승희・정화원・주호영・최인기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 83
142.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주호영・이인기・김재원・류근찬・박재완・김태환・공성진・이윤성・김석준・배일도・이명규・김희정 의원 발의)(계속) ····· 83
143.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전여옥・박세환・유승민・이인기・박재완・엄호성・이해봉・김재원・신상진・허태열 의원 발의) ····· 83
144.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염동연・김낙순・김동철・김태년・김태홍・박기춘・박상돈・안병엽・이시종・임종석・오제세・우제항 의원 발의) ····· 83
145. 赦免法 전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전여옥 의원 외 10인 발의) ····· 83
146.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10.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계속) ····· 88
11.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8
12.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8

13.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8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 88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 88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8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미경・천영세・박성범・류근찬・한광원・장복심・정종복・김덕규・노현송・이계진・정청래・노웅래・이광재・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권영길・우상호・박찬숙・강혜숙・김재윤・서재관・이광철・윤호중・강기정・김태홍・신기남・문병호・조정식・이낙연・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재건・변재일・우윤근・김낙순・염동연・조일현・이근식・강봉균・최용규・이종걸・장경수・양형일・우제창・우원식・진수희・김영주・노회찬・최순영・단병호・우제항・이강래・제종길・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88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89
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89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89
5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89
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89
6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89
6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89
62.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유기준・유승민・고진화・배일도・이계경・엄호성・정문헌・김정훈・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 89
63.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김명자・김영주・김춘진・민병두・우윤근・이계안・이미경・이영호・정의용・최재천 의원 발의)(계속) ····· 89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종걸・이광철・송영길・김태년・변재일・이미경・박상돈・고희선・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 89
6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명주・김석준・김양수・김재경・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 의원 발의)(계속) ····· 89
66.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89
6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89
68.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89
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89
7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89
71.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영세・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89
72.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주호・진수희・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89
73.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군현・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89
74.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권철현・김석준・김희정・

남경필・박형준・이인기・이주호・진수희 의원 발의)(계속) ····· 89
75.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이성권・곽성문・차명진・이주호・한선교・최구식・엄호성・이재오・박형준 의원 발의)(계속) ····· 89
7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9
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강창일・양형일・제종길・홍미영・안홍준・윤원호・이목희・우원식・장향숙・배일도 의원 발의)(계속) ····· 89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9
7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8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8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8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90
8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90
8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90
8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90
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90
8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유재건・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90
89.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90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91.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92.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우남・안상수・안민석・김현미・김영춘・정청래・백원우・문석호・박상돈・이미경・강혜숙・김원웅・김낙순 의원 발의)(계속) ····· 90
93.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광철・강창일・민병두・정봉주・안민석・김태년・최순영・이인영・김희선・이인제・서갑원・김낙성・곽성문・김송자・문희상・유재건・박상돈・최규성・김교흥・김영숙・이경숙・문학진・최재성・이미경・정병국・제종길・이계경・유필우・김용갑・이계진・엄호성・김학송・이재오・전병헌・이낙연・김원기・김근태・손봉숙・강기갑・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이영순 의원 발의)(계속) ····· 90
94.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계속) ····· 90
9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계속) ····· 90
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9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98. 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9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100.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101. 島嶼・僻地敎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10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1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104.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10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106.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문석호·안영근·염동연·유인태·강혜숙·김현미·정청래·서재관·신학용·양승조·전병헌·최철국·김교흥·박기춘·장경수·노웅래·이경숙·이은영·이근식·민병두·이상민·임종인·노회찬·박세환·나경원·유재건·장복심·송영길·우제창·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 90
107.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1
108.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1
109.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엄호성·이주호·박성범·진수희·김영숙·허태열·박세환·한화갑·권영세·이인기·류근찬·이혜훈·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 91
110.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제종길·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 91
111.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1
112.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정병국·이혜훈·한선교·안홍준·정종복·최구식·박승환·이군현·서상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박형준·임인배·이계진·박찬숙·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계속) ····· 91
1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 의원 발의)(계속) ····· 91
1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속) ····· 91
115.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91
1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계속) ····· 91
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권선택·김동철·김재윤·노영민·문병호·민병두·선병렬·우원식·유선호·유승희·임종인·제종길·최재천·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 91
118.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구논회·장향숙·김선미·김교흥·강기정·신학용·김춘진·김동철·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91
119.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안상수·김재원·이강두·이계경·임인배·안홍준·김정훈·권경석·김학송·엄호성·배일도·황우여·이재웅 의원 발의)(계속) ····· 91
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동철·류근찬·김낙순·변재일·이석현·윤호중·김선미·이승희·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 91
1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김양수·이계경·정문헌·황우여·유승민·황진하·곽성문·안택수·신상진·김명주·이원복·정두언·이재창·김재원·정의화·김정권·이강두·배일도·이경재·정갑윤·박순자·김영숙·안홍준·제종길 의원 발의)(계속) ····· 91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이경재·선병렬·김영주·김덕규·김재윤·김태년·이은영·이영호·정봉주·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 91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김재홍·김우남·정동채·이강두·정종복·김명주·이계경·이성구·배일도·박세환·서병수·이인기·김태년·이경재·황우

여・신상진・주성영・박상돈・박재완・백원우・정성호・박찬숙・서재관・이계진・임해규 의원 발의)(계속) ····· 91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1
125.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김현미・심재덕・유승민・이재오・고조홍・안병엽・박재완・심재철・안상수・이시종・손봉숙・배일도・김원웅・이상경・신학용・박상돈・오제세・노현송・엄호성・서재관 의원 발의)(계속) ····· 91
126.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윤호중・최성・박상돈・변재일・이해봉・이영호・이상민・김종률・이인기・서재관・황우여・안상수・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92
127.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석준・박계동・이성구・이상배・이성권・최철국・차명진・심재덕・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92
128.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선병렬・김종률・오영식・노영민・우윤근・한병도・제종길・한광원・임종석・조경태・김혁규・신학용・윤원호 의원 발의)(계속) ··· 92
129.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2
130.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2
131.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2
132.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2
133.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이계경・박형준・권철현・김양수・김명주・정진석・남경필・정화원 의원 발의)(계속) ····· 92
134.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박세환・안명옥・강혜숙・정동채・엄호성・이해봉・이낙연・노현송・심재철・이광철・황우여・박상돈・최순영・이재오・정화원・김춘진・임종인・이계경・강기정・홍미영・이상열 의원 발의)(계속) ····· 92
135.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계속) ····· 92
136.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기현・이해봉・신상진・이인기・박상돈・정성호・박재완・정의화・김학송・최구식・이명규 의원 발의)(계속) ····· 92
137.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2
138.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이주호・안홍준・박승환・김석준・남경필・권철현・김명주・권영세・박형준・원희룡・이계경・정병국・정문헌・김병호 의원 발의)(계속) ····· 92
139.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권영길・강기갑・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92
140.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재경・김재원・장윤석・박재완・김충환・전여옥・안상수・심재엽・허천・신상진・김용갑・박찬숙 의원 발의)(계속) ····· 92
141.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영선・김태환・김홍일・박재완・손봉숙・이상열・이승희・정화원・주호영・최인기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 92
142.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주호영・이인기・김재원・류근찬・박재완・김태환・공성진・이윤성・김석준・배일도・이명규・김희정 의원 발의)(계속) ····· 92
143.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전여옥・박세환・유승민・이인기・박재완・엄호성・이해봉・김재원・신상진・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 92
144.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염동연・김낙순・김동철・김태년・김태홍・박기춘・박상돈・안병엽・이시종・임종석・오제세・우제항 의원 발의)(계속) ····· 92
145. 赦免法 전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전여옥 의원 외 10인 발의)(계속) ····· 92
146.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2

147. 非訟事件節次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발의)(김성조 의원 외 11인 발의) ····· 95
1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정부 제출) ····· 95
1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 ····· 95
1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김현미・노웅래・박찬석・이상경・이상민・이인영・강창일・정청래・제종길・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96
1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 ····· 96
1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박상돈・정동채・이계경・김학송・정화원・김종률・이성권・서병수・황우여・엄호성・이경재・신상진・최경환・박재완 의원 발의) ····· 96
153. 民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안상수・김영덕・권경석・정갑윤・박형준・박상돈・이강두・김양수・김정부・최구식・신상진・이영호 의원 발의) ····· 96
15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효석・박명광・김정훈・엄호성・주성영・김석준・이성권・정화원・안명옥・김태환・이상배・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96
1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156.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엄호성・박세환・박재완・주호영・임태희・이명규・배일도・김정훈・정두언・김명주・장윤석・강길부・김재경・황우여・이계경・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 96
15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유재건・홍미영・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계속) ····· 96
158. 刑事訴訟法 一部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유시민・서갑원・원혜영・노현송・이원영・홍창선・김재홍・이철우・김영춘・조배숙・서재관・우제창・신중식 의원 발의)(계속) ····· 100
159.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서병수・김충환・김기춘・주호영・이상득・유기준・김광원・박승환・김석준・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 100
1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상돈・안상수・안명옥・이계경・심재덕・이상열・이인제・장복심・양승조 의원 발의) ····· 100
161.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유기준・김재원・이해봉・이인기・주호영・엄호성・진수희・이계경・정종복・박재완 의원 발의)(계속) ··· 100
162.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이해봉・이성권・황우여・이인기・안상수・이계경・김용갑・김영숙・김정권・김석준・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 100
163.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서병수・심재철・이해봉・이계경・김재원・박재완・박세환・박찬숙・황우여・배일도・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100
164.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충환・김희정・엄호성・박순자・진수희・김기현・박세환・이재오・정병국・이명규 의원 발의)(계속) ····· 100
165.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박세환・김재원・고흥길・안명옥・배일도・고조흥・유승민・안상수・김부겸・유기준・이혜훈・이해봉・최성・전재희・김성곤・황우여・조경태・이근식・홍창선・정병국・정화원・신기남・박재완・이경재・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 100
166.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명규・엄호성・권오을・윤건영・유승민・안상수・이계경・박찬숙・김재원・이혜훈・박재완・박승환・전여옥・박명광 의원 발의)(계속) ····· 100
167.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윤건영・문희・김희정・박재완・심재엽・곽성문・이규택・박찬숙・이병석・전여옥・진수희・김

영숙・장윤석・이계경 의원 발의)(계속) ····· 100
168. 出入國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재오・유시민・노현송・김영주・이영호・이원영・유승희・김태년・신중식・박찬석・김한길・한광원 의원 발의)(계속) ····· 100
169.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엄호성・최경환・안경률・김정훈・안상수・이주호・김충환・주호영・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 100
17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심재덕・박찬숙・이강두・이계경・김영덕・김정훈・김석준・이재웅・임인배・박형준 의원 발의)(계속) ····· 100
171.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이계경・박형준・권철현・김양수・김희정・김명주・남경필・정화원 의원 발의)(계속) ····· 100
172. 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이재웅・안명옥・김재경・정진섭・김영숙・김정훈・김성조・박재완・유기준・윤두환・서병수・한선교・진영・이종구 의원 발의)(계속) ····· 101
173.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재원・정병국・허태열・진수희・이방호・안경률・박재완・심재엽・김기춘・유정복 의원 발의)(계속) ····· 101
174.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명광・강창일・노현송・황우여・박기춘・박재완・박상돈・안상수・김종률・김동철・강기정・이근식・심재덕・정성호・우제창・이계안・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 101
175.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원혜영・최인기・노현송・노웅래・정성호・김원웅・장복심・장향숙・박계동・현애자・최성・노영민・주승용・강창일・오영식・천영세・유기홍・이철우・류근찬・김태홍・이군현・이원영・임종석・고진화・강기정・최순영・이영순・양형일・단병호・노회찬・심상정・권영길・강기갑・유승희・백원우・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 101
176.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기우・박기춘・이해봉・최재성・김형주・유기준・강창일・박세환・박재완・오제세・김혁규・이은영・이원영・노현송・백원우・배일도・염동연 의원 발의)(계속) ····· 101
177.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발의)(최재천 의원 외 150인 발의)(계속) ····· 101
17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김현미・김희정・박세환・박순자・손봉숙・이경숙・유승희・이계경・이계안・이재오・조배숙・진수희・최순영・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 101
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정형근・박상돈・박재완・유기준・노현송・김재원・안상수・윤건영・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101
180.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박계동・박찬숙・신국환・신중식・서재관・서혜석・최인기・안병엽・이시종・이정일・이윤성・이혜훈・엄호성・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101
181.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신상진・이영호・정동채・김낙순・홍창선・이광철・선병렬・정봉주・최재천・이원영・정성호・장경수・김교흥・정의용・윤원호・지병문・이화영・김재홍・우제창・제종길 의원 발의) ····· 101
182.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이은영・오제세・이계경・송영길・조일현・우원식・장영달・노영민・민병두・문학진 의원 발의) ····· 101
183.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원희룡・강창일・김명주・정병국・이명규・이성권・이영순・박계동・현애자・배일도・박형준・정문헌 의원 발의) ····· 101
18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염동연・신기남・정봉주・오제세・정성호・조성래・김태홍・유승희・김영춘・정청래・김희선・김태년・전병헌・이계진・배일도・정

병국・이광철・황우여・장복심・신국환・제종길・이상경・노현송・류근찬・이원영・홍미영・이근식・유필우・안병엽・안상수・심재덕・강기갑・고진화・최경환・이진구 의원 발의) ····· 101
1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공성진・곽성문・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태환・김희정・박계동・박세환・박재완・엄호성・유기준・이시종・이재오・이주호・이해봉・김영숙・최인기・황진하・심재철 의원 발의) ····· 101
186.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고진화・구논회・김부겸・김성곤・김재경・김희선・노현송・박상돈・송영길・신국환・신중식・심재철・안민석・안병엽・안상수・양형일・오제세・우제창・유선호・이근식・이미경・이시종・이재오・이종걸・전병헌・정문헌・정봉주・정성호・정청래・주호영・최인기・최재성 의원 발의) ····· 101
187.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박형준・정화원・안홍준・김양수・이계경・남경필・배일도・이재웅・김무성・김석준 의원 발의) ····· 102
18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유기준・임해규・심재철・엄호성・박상돈・선병렬・최재천・우윤근・변재일・이종걸・박기춘・노현송・이원영・박재완・김재윤 의원 발의) ····· 102
1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한광원・박형준・권오을・김명주・유기준・이인기・박상돈・김성곤・김정훈・김석준・이성권・김광원・김충환・신상진・나경원・엄호성 의원 발의) ····· 102
1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김덕규・이상열・박상돈・김낙순・노현송・김효석・박기춘・이종걸・김성곤・김영춘・홍미영・김혁규・양형일 의원 발의) ····· 102
191.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곽성문・박재완・이해봉・주호영・엄호성・배일도・김영선・박찬숙・장복심・이계경 의원 발의) ····· 102
192.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안택수・김재원・황진하・이인기・이윤성・조성래・김애실・이상경・정형근・김영선・박상돈・이해봉・박재완 의원 발의) ····· 102
193.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공성진・김석준・김영숙・박재완・신상진・안택수・이경재・이성구・이윤성・이인기・이재웅・이해봉・정의화・한선교 의원 발의)102
194.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배일도・유정복・엄호성・정의화・이종구・김석준・안홍준・이계경・심재엽・고흥길 의원 발의) ····· 102
195.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배기선・우제항・김부겸・장향숙・정성호・강기정・정장선・유재건・강창일 의원 발의) ····· 102
196. 인신보호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고경화・고진화・곽성문・김영춘・김원웅・김정훈・김태년・김태환・김희정・박세환・박순자・박재완・박진・박창달・서재관・손봉숙・신학용・안상수・안택수・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제창・유기준・유정복・윤건영・이계경・이계진・이규택・이근식・이상경・이상득・이상열・이윤성・이해봉・이혜훈・임태희・장윤석・전여옥・정두언・정병국・정종복・정화원・진영・최경환・최구식・홍준표・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103
197. 건축기본법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상돈・김희선・김명자・김영주・최철국・김낙순・박찬석・장복심・노웅래・조성래・주승용・장향숙・김혁규・문학진 의원 발의) ····· 104
1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혜석 의원 대표발의)(서혜석・김우남・김현미・최규성・우제창・선병렬・김동철・이종걸・서상기・홍창선・강성종・천정배・유승희・류근찬・김영주・제종길 의원 발의) ····· 104
19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4
200.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4
201.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05
202.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6

203. 인권교육진흥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상돈·김명자·지병문·김태년·김영춘·선병렬·문병호·김현미·이계안·이상경·김동철 의원 발의) ····· 106
204.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06
20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정부 제출) ····· 106

(10시09분 개의)

○委員長 崔炳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모두 2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새롭게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해야 할 법률안이 타 위원회 법하고 고유법을 합치면 74건이고 나머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의결을 해야 하는 법률들입니다.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들어가므로 오늘 바쁘시겠지만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委員長 崔炳國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두 가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국회에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법률안을 상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02항에서 207항까지의 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나 긴급한 사유를 감안하여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이 회부된 후 20일이 되기 전에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04항, 제206항 및 제207항의 법률안은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긴급한 사유를 감안하여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회찬 위원 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제206·207호가 지금 삼성그룹과 관련된 특검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맨 뒤에 다뤄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 법안은……

제가 지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회의안건 1호·2호로 다뤄 가지고 상정을 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배려가 있으셨다면 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하게 두 안을 갖다가 조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 없이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또 혹시 토론이 길고 하면 다른 법률안 심사에 좀 장애가 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문병호 위원님.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노회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법사위가 좀더 진전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비자금 로비의혹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총장인사청문회, 또 그간에 우리 법사위 위원들의 생각을 보면 이 사건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대체적인 우리 법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법사위 상임위 장에서 특별검사법이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1·2항으로 상정을 해서 법안소위에 넘기고 오늘 점심 때라도 법안소위를 긴급하게 열어서 오늘 오후에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의사일정을 정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은 특별검사를 하지 말자,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고…… 내년 2월달에 가서 특별검사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더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일정을 진행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金命柱 委員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委員長 崔炳國 예, 김명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金命柱 委員 삼성비자금과 관련된 특검법에 관해서 우리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 특검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2004년 5월달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대선자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4년 5월달에 삼성의……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837억 원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달에 불법대선자금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그런데 삼성의 임원들이 외국으로 도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한 500억 정도가 행방이 묘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달에 재조사를 했는데 삼성비자금의 재조사 결과가 이회창 총재 측에 24억, 이광재 전 의원한테 6억, 퇴직금이 32억 6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때 검찰 조사 결과가 433억을 그대로 삼성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됐습니다, 우리 토론했으니까.

○金命柱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대선자금까지 비자금을 같이 조사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장내 소란)

○委員長 崔炳國 이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

206.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천영세·김영춘 의원 외 148인 발의)

207.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의원 외 128인 발의)

(10시15분)

○委員長 崔炳國 의사일정 제206항, 의사일정 제207항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으로 바꿔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6항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07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 법안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 법안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수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에도 차이가 있으며,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도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안은 대법원장으로,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은 대한변호사협회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특별검사의 도입을 위한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그저께 충분히 질의가 됐으니까……

○문병호 위원 한 말씀 할 게 있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소위로 하자, 이러면 또 다시 양쪽이 왔다 갔다 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하기가 그런데……

○문병호 위원 아니, 당부……
○박세환 위원 아니, 당부할 뭐……
○문병호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박세환 위원 아, 그러면 우리도 다 할 거야.
○委員長 崔炳國 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노회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팍팍 줘.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문병호 위원님, 1분만 딱 해 주세요.
○문병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에 특별법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또 이 특별법을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만들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데 그렇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법안을 만들었지만 1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야 간에 의견만 좁히게 되면 바로 법안을 성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법안소위에 넘기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간사 두 분한테 오늘 중으로 합의할 것을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오늘 중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委員長 崔炳國 이것 알았습니다.
○문병호 위원 아니, 한나라당은 특검법 내놓고 지금 할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委員長 崔炳國 또 이렇게 나온다……
○金命柱 委員 무슨 소리야!
○박세환 위원 뭘 그렇게 얘기해!
○주성영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 공세할 거야!
○문병호 위원 아니, 법안을 냈으면 심의해서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성영 위원 아니, 누구는 안 하자고 그래요, 지금?
○문병호 위원 빨리 해야지요. 오늘 안 하면 사실상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주성영 위원 그런 식으로 정치…… 좌우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선병렬 위원 할 거면 소리를……
○委員長 崔炳國 그다음에 우리 노회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성영 위원 누가 지금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하세요.
○주성영 위원 왜 지연시키는 거야, 왜 자꾸 지연시키는 거야?
○문병호 위원 지연시키기는, 자기가 지연시켜 놓고 왜 우리한테……
○주성영 위원 무슨 자기가 지연시켰다고 그래!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하세요.
○문병호 위원 참, 이상한……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문병호 위원 아니, 오늘 중으로 노력하자는 거예요, 노력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 작전으로 해 갖고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 노회찬 위원님, 간단하게 좀 얘기하세요.
○노회찬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 없이 1소위로 넘기고요, 넘기시고 그 시한을 위원장께서 정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시한은 무슨 시한이야, 법률안 처리에 무슨 시한이 있어요?
○노회찬 위원 안 하겠다는 거요, 뭐요! 시한을 왜 겁내는 거요?
○박세환 위원 아니, 겁내긴 뭘 겁내!
○노회찬 위원 시한을 왜 겁내는 거요, 시한을 왜 겁내는 거요?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해 주세요.
○노회찬 위원 삼성특검 안 하겠다는 거요, 왜 시한을 겁내는 거요?
○박세환 위원 안 하기는 뭘 안 해!
○노회찬 위원 아니, 시한을 왜 겁내느냐고?
○이주영 위원 대상을 다 같이 넣어 줘야 될 것 아니야.
○노회찬 위원 아니, 그것 다 넣는다니까요.
○이주영 위원 다 넣어 주면 하지.
○박세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아니, 시한을 정하면 토론 없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委員長 崔炳國 봐라, 이렇게 될까 싶어서, 질의는 그전에 많이 했으니까 소위에 빨리 넘기자 했는데 또 계속 질의하고 이러면……
○박세환 위원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

아……

(장내 소란)

○노회찬 위원 저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니까요.

○박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다 양보해, 그리고서 하라고.

○선병렬 위원 양보할게.

○문병호 위원 양보할 테니까 해 봐요.

○박세환 위원 쟁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말이야, 뭘 오늘 중으로 하자는 중이야!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주성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뭘……

○委員長 崔炳國 좀 그 말씀할 때……

○박세환 위원 지금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해 주세요. 말씀할 때……

○노회찬 위원 뭐가 두려운 건데?

○문병호 위원 시한을 정하자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박세환 위원 두려운 사람들은 이쪽에 있어요. 우리보고 얘기하지 말고, 두려운 사람들은 이쪽에 있지.

노회찬 위원 말이에요, 이쪽 보고서 얘기하지 말라고, 뭘 두려워?

○노회찬 위원 내 앞에 그쪽이 보이는데……

○박세환 위원 이쪽 보고서 얘기해.

○이주영 위원 한나라당이 원하는 그 수사대상 다 해 줄 거지?

○문병호 위원 해 줘야지.

○주성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해 줄 거면 별문제 없어.

○노회찬 위원 그러니까 시한을 정하자는 거지요. 시한을 왜 못 정해요?

○이주영 위원 그래 가지고 안 넣어 주고 그냥 넘기려고?

○주성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하실 분이야, 저분이?

○委員長 崔炳國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주성영 위원님, 딱 1분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회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위원의 얘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위원장께서 1소위에 회부하기로 한 데 대해서 우리 양당 간사가 이의 없이 가만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오늘 당에 제보가 왔어요. 어떤 제보냐 하면 김용철 변호사하고 사제단에서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에 관한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제단에서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委員長 崔炳國 됐어요. 좀 그만합시다.

○주성영 위원 그래서 1소위에 넘겨 주셔서 1소위에 맡겨 주십시오.

○委員長 崔炳國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빨리 신속하게, 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 시한을 정해 주세요.

○박세환 위원 시한은 무슨 시한이야?

○문병호 위원 시한을 정해야지, 이것 오늘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세환 위원 쟁점이 다른 게 많다니까 그러네.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고유 법안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인가는 두 간사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지금 제1소위로 이제 회부가 됐

습니다. 그래서 제1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의 성격상 긴급하고 중대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소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결말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환 위원 회의 소집해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니야.

○委員長 崔炳國 자자, 그만하고요.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정부 제출)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계속)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계속)
7.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계속)
8.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엄호성·윤건영·이인기·정병국·심재철·김재경·안상수·유정복·공성진·나경원·김애실·박계동·김재원·김문수·배일도 의원 발의)(계속)
9.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10시27분)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이주영 위원입니다.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정부안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에 따르도록 해서 협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이 규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해서 국가안전 보장을 달성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국민의 재산권 등을 더 보호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금융허브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전문지원센터 건립과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의 법률안의 공통된 사항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각종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의 상세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만을 정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점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수급 안정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되,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정부안입니다—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과오납금의 환급과 과다 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했습니다.

가산금의 이율을 연 1할 5푼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참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구체화하되,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와 과다 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동일한 이율에 따르도록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 형량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의 벌칙조항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규정을 삭제한 것과 맞추어서 이 법안에서도 삭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소관부처를 농림부로 하는 점의 적절성에 대해서, 비록 당초 계획과는 달라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농림부장관을 주무 소관기관으로 하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관계부처 간의 조정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용지를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로 명확하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관계로, 또 농림부장관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총회에 참석하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수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서 각각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도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해외 출장 중입니다. 또 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준공식에 참석차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차관님들이 대리 참석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 예, 제가 좀……

○委員長 崔炳國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국민에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그런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대 전술이 전자전, 과학전으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유감스럽게도 전통적인 어떤 보병전술을 기초로 해서 육안 확인, 백병전,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고양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1건 1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식으로, 심사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의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권한, 이런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득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는 획일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정하겠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호구역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어떤, 종래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던 그런 상황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헌법 위반의 정도가 너무나 현저하게 중대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폭적으로 이런 어떤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그 내용 중에 일부 전향적인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접경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법이고 헌법 위반의 정도가 너무나 심한 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국방부장관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과연 정말 이 법을 유지할 것인지,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최소한의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장수 박세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1.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5.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 의원 발의)(계속)
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

원 대표발의)(양승조・김재윤・유재건・박상돈・심재덕・한광원・이인기・노현송・이계경・변재일・이종걸・최성 의원 발의)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재홍・이낙연・엄호성・안상수・김선미・조승수・황우여・배기선・이해봉・신기남・정성호・허태열・김충환・진수희・조성래 의원 발의)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40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0항에서 제2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이주영 위원입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세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관련된 법률로서 파산자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17개의 다른 법률이 이미 우리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이 법률들과의 형평을 감안하고,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정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개정된 법안들로서 표현들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용어 표현 예들하고 적정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지금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의 노력들을 인정하기로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구호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또 다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대안)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삭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안 제35조의2에서 상시 4인 이하의 시설종사자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반하고,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할 발암물질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표기의무 불이행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발암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임조항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한 시행일 규정은 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 담배사업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공포 후 1년으로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용사 자격요건에 관한 조항을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서 이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말씀드리면,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중 범죄전과와 관련해서 불법고용알선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항 위반자를 추가하는 것과 벌금 외에 범칙금 통고처분자도 결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불법고용알선의 폐해를 고려해서 이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을 결격사유로 삼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벌금을 대체하여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상금의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심사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 및 건강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표시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식품에 관한 표시기준을 식약청장이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기준의 통일적 운영 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표시기준도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를 개정안과 같이 100㎡ 이상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영업장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전면 확대할 경우 소규모 영세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형 음식점 위주로 도입하고 전면 확대는 추후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육 중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경우 유통정보 추적시스템이 미비해서 법 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쇠고기와 달리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유전자 검사로 원산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원산지 증명서나 영업자 간 거래내역 등 유통단계별 거래기록 관리를 통해서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배추김치는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특성상 원산지 표시기준이 애매하여서 영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제정 시 김치공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命柱 委員 위원장님, 그런데 통일외교 관련

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그것은 곧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10항부터 13항까지의 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부의 소관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지금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조금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16항에서 제2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2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바 있으나 어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합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여 단일한 위원회안으로 제23항을 제출하면서 2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2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로 반려하고 제2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환 위원** 내용은 동일한 것이지요?

○**委員長 崔炳國** 똑같은 것입니다. 2건이 있어서 내용을 같이 합친 것입니다.

---

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7. **연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9.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계속)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32.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우주손해배상법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홍창선・정갑윤・김명자・최규성・이경숙・이은영・이종걸・정문헌・이낙연・변재일・윤원호・강성종 의원 발의)
34.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민 의원 외 23인 발의)(계속)
3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창일・강혜숙・구논회・권선택・김교흥・김낙성・김덕규・김덕룡・김명자・김무성・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성조・김영선・김영주・김우남・김재윤・김재홍・김정훈・김종률・김종인・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형주・김홍일・김효석・김희선・나경원・노영민・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안민석・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인태・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두・이강래・이경숙・이계경・이계안・이계진・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열・이시종・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정일・이종걸・이혜훈・이화영・임종인・임채정・임태희・장경수・장복심・장

영달・전병헌・전여옥・정갑윤・정성호・정청래・조배숙・지병문・진수희・채수찬・최성・최규성・최규식・최연희・최인기・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

3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대안)(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계속)

(10시53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연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홍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손해배상법안, 의사일정 제34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5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대안)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소수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소수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심사하였습니다.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뉴타운 개발사업 시 규모를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연안권발전 특별법(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안관리법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명 및 법안내용 중 '연안권'을 '동・서・남해안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종합계획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12조제2항 단서를 신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대상공원 및 공원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대상공원 및 공원시설의 종류・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 관리의 기본인 통합적 국가계획으로 의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안권 범위에서 자연공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이사 정수 과반수를 외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 정수 1인을 감축하여 상임이사를 4인으로 하고 비상임이사 5인을 순증하여 이사 정

수를 9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20㎞ 이하의 저속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차별 또는 인종 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란 표현은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벌칙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의 철거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그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국제경기대회 등과 관련한 옥외광고사업 주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의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국제행사 등의 기금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은 이 법에 일반적 근거를 두되 수익금 배분비율 등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심사한 결과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을 일반인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념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맞추어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입되는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구별하여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와 모순되거나 유사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업종의 사용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택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해서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사납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대립이 야기될 수 있고 택시 운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과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전체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주손해배상법안, 홍창선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주손해 당’이라는 용어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주손해 당’ 용어가 우주물체 발사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고 오히려 이를 삭제하는 것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손해배상청구의 권리행사기간을 피해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원안대로 1년으로 하되 제척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입법의 오류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구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 부담금의 환급을 인정하되 공교육의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시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소요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시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

에 관한 법률안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무주'라는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소수의견과 법률을 만들고 이 법률을 근거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부에서 미리 사업을 추진한 후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법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종전의 입법례에서 주요 국제경기대회 유치 이후 지원법을 제정한 선례가 다수 있었음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저도 법안심사제2소위원으로서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에 관련해서 연안권의 범위에 자연공원의 공원구역만이라도 좀 연안권 범위에서 제외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고 이 조항에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연공원은 전 국토의 4.9%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고유 생물 자원의 70% 이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이 우리 법안심사소위의 의결대로 통과되면 전 국토의 자연 파괴는 물론 한반도 생태계에 심대한 파괴를 피할 길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전가치가 매우 큰 자연공원을 연안권의 범위 내에서 좀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소위의 토의내용에 대해서 좀, 자연공원의 공원구역만을 연안권의 범위에 포함 안 시키는 걸로 변경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환경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재홍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장관께서 급히 오시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고 계십니다.

○선병렬 위원 잠깐만요.

○박세환 위원 다 타협이 된 것이잖아?

○소위원장 이주영 타협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제 발언 끝나면 하세요.

○委員長 崔炳國 발언 끝나고 난 뒤에 하세요.

○선병렬 위원 발언 끝나면 하시라고요.

○박세환 위원 이제 와 가지고 그것을 또……

○委員長 崔炳國 더 들어 봅시다.

○선병렬 위원 왜 이렇게 벌떼처럼 달라 들어요?

환경부장관 안 나오셨어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재홍 지금 오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환경부장관 안 나왔으면 들어가.

○선병렬 위원 환경부장관 안 나오셨어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재홍 오고 계신데 도착을 아직……

○소위원장 이주영 들어가, 들어가.

○선병렬 위원 지금 나오신 분 누구시라고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재홍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선병렬 위원 자연보전국장이, 그래서 위원장……

○委員長 崔炳國 이 법안이 어느 소관입니까?

○선병렬 위원 환경부요.

○소위원장 이주영 건교부 소관입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잖아. 아, 왜 그래 정말? 아이고 참.

○노회찬 위원 환경부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얘기 들어봅시다.

○委員長 崔炳國 자 자 조용히 하시고 마저 마무리 말씀 하세요.

○선병렬 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느냐는 마지막에 말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 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설령 이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이 소위에 의결된 내용대로 통과되더라도 환경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의 환

경 파괴와 관련 심각성 같은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을 좀 들었으면,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고유 권한이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주영 소위 위원장으로 말씀……

○委員長 崔炳國 자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누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소위원장 이주영 예, 소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委員長 崔炳國 소위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주영 우리 선병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점입니다.

이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상공원이 있고 또 해상공원 또 한 가지가 뭐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안에 관해서는 아름다운 섬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에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배가 댈 수 있는 선착장 그다음에 전망대 설치하고 전망대까지의 탐방로 이렇게만 하도록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 위원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자연환경 피해는 없다 하는 소위원들의 합의 결론에 따라서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 차례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선 위원께서, 아마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로비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공원 여기 이 부분을 제외시켜 버리고 나면 이 법안의 기대효과를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환경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다 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법은 상당한 부분을 건교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안 중에서 다 반영을 했다,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제외해서는 아무 의의가 없는 법이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委員長 崔炳國 계속 토론하실 것입니까?

○선병렬 위원 말씀하시고……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命柱 委員 연안권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선병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도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맞고 또 사람이 그 환경과 어울려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공원법 안에 특혜를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주영 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지극히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전혀 그 개발을 못하게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선병렬 위원 이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이 많은 논란이 있던 법입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그런 논란이 있었던 내용을 전체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세환 위원 정치적으로 다 타협을 지었잖아?

○선병렬 위원 들어봐요. 정치적인 타협은 타협이고……

○박세환 위원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것 아니야?

○선병렬 위원 정말 왜 이러나 모르겠네?

○문병호 위원 박세환 위원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委員長 崔炳國 말 들어 봅시다.

○선병렬 위원 이 양반들 진짜 답답한 양반들이네.

○문병호 위원 상임위에서 발언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냅둬.

○委員長 崔炳國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선병렬 위원 그것도 반영이 돼서 해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말을 못 하게 해?

○委員長 崔炳國 자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말

씀하세요.

○박세환 위원 충분히 다 했잖아? 누가 말을 못 하게 말해? 말을 못 하게 하기는.

○委員長 崔炳國 시비하려고 하지 말고 선병렬 위원님 마무리 말씀하세요.

○선병렬 위원 많이 논란이 되어 있던 법이고 박세환 위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것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는 순간에도 저는 이 자연공원의 공원구역을 연안권 범위 내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쪽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이 법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던 환경부 얘기를 좀 듣자 이거야!

○委員長 崔炳國 말씀 톤을 좀 낮추세요.

○박세환 위원 왜 반말이야, 반말은?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최소한의 요청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선병렬 위원의 발언이 지금 다 속기록에 남아 있고 관계부처에서도 다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또 환경부하고 의견 대립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쪽의 이야기 들으면 또 토론이 길어지고 여태까지 소위원회 활동했던 것이 전혀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병렬 위원님의 그런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선병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법을 관할하는 부처는 건설교통부입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와……

○委員長 崔炳國 그게 속기록에 남아서 충분히……

○선병렬 위원 계속 마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감독권한은 환경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것 듣는 걸로……

○委員長 崔炳國 그것 들으면요, 양쪽이 또다시 반대토론 나옵니다.

○선병렬 위원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委員長 崔炳國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노동부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님, 요 건은 아니지요?

○선병렬 위원 가만있어 봐요, 문병호 위원님.

위원장님 참 이상하시네.

○委員長 崔炳國 또 이상하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선병렬 위원 왜냐하면……

○주성영 위원 선병렬 위원님만 마이크 잡았다 하면……

○소위원장 이주영 그만 좀 마무리해요.

○주성영 위원 마무리해요.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해 줘야지요. 환경부 얘기 한 1~2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니야?

(장내 소란)

○委員長 崔炳國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금 했잖아?

건설교통부하고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노동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해서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선병렬 위원 표결합시다. 표결해요. 표결하시자고요.

시간을 오히려 줄여줄라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환경부 의견……

○委員長 崔炳國 환경부에서 나오면 건설교통부에서 또 이야기를 해 봐야 되고 또 찬반이 논의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소위원회에서 안 했습니까?

○선병렬 위원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면 더 이상 논란이 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마지막 들으면 또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또다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선병렬 위원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면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崔炳國 그렇지 않지요. 그러지 마세요.

문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병렬 위원 이 법 표결하시자고요.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의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방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저도 선병렬 위원과 같은 의견으로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다음에 3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崔炳國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보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저는 우리 법사위의 회의진행방식이, 다른 상임위에 모범이 되어야 될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언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의 회의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발언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도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법사위가 의결한 것을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쯤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부에 발언할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선병렬 위원이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부 나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 좀 주시고, 뭐 몇 분 걸리겠습니까?

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관해서도 교육부총리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기회를 주셔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하시고 판단은 우리 국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炳國 김동철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인데 이것은 벌써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이야기도 듣고 건설교통부 이야기도 듣고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거기 가서 결정이 되어 온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면 환경노동부에서 의견을 들으면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건설교통부 이야기도 듣고 또 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의의 어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기이 논란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발언권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발언하실 때 발언권 좀 얻어서 하세요.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그러려면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왜 묻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얘기 다 한 것 아니요. 얘기 다 한 것 아닙니까?

○선병렬 위원 환경부 얘기 듣고 마무리하자 이거지요.

○委員長 崔炳國 그것은 못 듣겠습니다.

○金命柱 委員 위원장님, 다른……

○委員長 崔炳國 예,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命柱 委員 방금 소위 위원장님이 보고한 법률 중에 노동부의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소위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최저임금법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소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택시 운전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입장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실행 과정에서.

특히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사납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납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투쟁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게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노사 관계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행법이 200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와 같은 큰 도시부터 시작되는데 이 이전에 해결 방법을 노동부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에게도 버스와 전동차와 같은 교통카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명백하게 누가 어느 손님이 얼마만큼, 택시 운전사가 하루 수입이 얼마였는지 업주도 알고 근로자도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또다시 노사의 분란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노동부장관 이상수 참고로 말씀 올리는데요, 이 법은 노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본 것입니다. 제가 노사를 같이 모시고 오랫동안 협의해 가지고 합의된 법안입니다.

○金命柱 委員 그런데 그 합의가 예를 들어서 대형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도 괜찮다

고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만약 이 법대로 시행이 된다면 중소기업 택시업주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게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고 노동부 입장에서는 2009년 시행일 전에 이와 같은 우려되는 상황에 관해서 미리 대비책을 좀 세워 두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무런 마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회찬 위원 위원장님, 연안권발전 법안은 표결해 주시지요.

○委員長 崔炳國 연안권법에 대해서요?

○노회찬 위원 예.

○委員長 崔炳國 이것 소위원회에서 이미 했는데 소수의견 달고……

○노회찬 위원 저는 그 소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타협했다고 그러는데 그 타협할 때 참가도 안 했고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다 표결해야지, 그러면 저도 법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노회찬 위원님, 소수의견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다시 표결하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주성영 위원 노회찬 위원님의 소수의견도 좋습니다. 소위원회 1소위, 2소위를 운영하면 소위에서도 속기록이 다 작성이 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선병렬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좋습니다마는 또 주무부처도 아닌, 장·차관도 아니고 국장을 불러다 놓고 발언대에 세우겠다 이런 것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면 다른 법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해서 전체회의에 올리면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을 회의록에 남겨서 통과시키는 우리 법사위원회의 시스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 처음부터 일일이 표결하겠습니까? 노회찬 위원님의 의견을 속기록에 남겨서, 그리고 선병렬 위원님의 의견도 남겨 가지고 순리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회찬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어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얘기 안 한 적도 있어요. 본회의에서 반대토론한 적도 있고, 또 여기서 소수의견으로 남긴 경우가 많았는데 특별히 반대를 강조할 때는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표결해 달라는 겁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서 반대…… 표결하세요.

그런 의견을 붙여서 통과……

○박세환 위원 소수의견 붙입시다.

○委員長 崔炳國 노회찬 위원님, 이것 표결을 하게 하면 우리 법사위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회찬 위원님이 그런 어떤 소수의견도 있고 자연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하는 선병렬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한 그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노회찬 위원 이해 안 한 채 강행을 하십시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선병렬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해 주세요.

○선병렬 위원 사실 제가 환경부 쪽 이야기를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놓고 이 법과 관련된 논란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신다니까 참 유감을 표명하고요.

건교부 관할 법이지만 이해가 상충하는 환경부 의견을 전체회의에서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심의할 때 그런 아주 심란한 걱정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전체회의에서 우러나도록 해야 되는 게 시스템 아닙니까, 주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이렇게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드러났다고 보고, 저는 소위 의견 결과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위원, 크게 승복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회찬 위원님도 소수의견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노회찬 위원 표결을 안 해서 소수인지 다수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소수라고 하면……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소수 빼고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으로……

○박세환 위원 위원장 되면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 정도도 모르시면 어떻게 위원장을……

○주성영 위원 아니, 노 위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및 제2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서 제3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국 위원장, 이상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상민 장내 정리를 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장관 다 입장하셨습니까?

---

37. **農業·農村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8. **식품산업진흥법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김우남·김광원·김형오·최규성·이강두·홍문표·한광원·신중식·김낙성 의원 발의)
39.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1. **農藥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김영덕·우윤근·신중식·김우남·한광원·이계진·이강두·김재원·김광원·홍문표·김홍업·강기갑 의원 발의)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최성·김정권·오제세·채일병·이시종·이영호·김홍업·홍문표·최인기·우윤근·노영민·이인기·김영덕·한광원·김효석·이용희·조일현·김태홍·김낙순·최규성·김광원·김우남·이방호·이낙연·조경태·서갑원·김송자·김명주·강기갑·유선호·박명광 의원 발의)
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명광·송영길·문병호·홍미영·윤원호·최규성·서혜석·유승희·정청래·박영선·심재덕·김덕규·이석현·노영민·이시종·조정식·김재윤·서갑원 의원 발의)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31분)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39항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신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3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9항에서 제4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37항 및 3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권오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권오을 존경하는 법사위

원장님을 비롯한 법사위원 여러분!

먼저 원산지표시 확대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통과, 새만금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농해수 관련 법안은 해당 부처 간에 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와 농림부는 제가 제안설명하는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에 식품산업진흥법안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그리고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DDA·FTA 등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둘째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국토환경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장치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는 등 향후 농정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자재산업의 육성정책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농업인과 식품업계 및 소비자의 여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개방화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하에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둘째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력, 기술, 정보화 등의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을 장려하고, 우리의 고유한 식문화 보급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식문화와 음식들을 세계화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서면으로 제출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원장님 이하 법사위원 여러분들!

이 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4항 및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 박해상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 이태리에서 열리는 제34차 FAO 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불가피하게 차관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산림청장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산림사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이 폐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녹색자금 사용대상 사업에 해외산림 환경 기능 증진 및 자원조성 사업을 추가하여 해외산림자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특위는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WTO/DDA, FTA 협상에 따른 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구축 등 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설치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안건들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일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재의 법률 제명인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식품산업의 기본법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안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회에 함께 심사 중인 식품산업진흥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인 점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농림부 조직의 기본법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일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이 법의 불필요한 시행일 공백기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진흥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식품산업의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제2조제1호에서 식품을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식품산업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관·운반·유통 및 소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제조·가공업, 외식업, 식품유통업 등 일련의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과 같이 개정이 추진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식품과 식품산업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정안에서 별도의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산업으로 정의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유기가공식품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제2조제5호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제조·유통되는 식품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제정안에 의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식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기가공식품을 인증받은 식품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2조제5호의 유기가공식품의 정의에서 "제2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표 부착의 예외에 관하여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본문은 소의 이력 추적을 위하여 양쪽 귀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

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서 마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출생·수입 신고된 모든 소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귀표를 부착하도록 하되 귀표를 부착하기 어려운 소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벌칙 관련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18조제2호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하도록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균형에 맞지 아니하므로 귀표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벌칙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정리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3항은 현행 규정이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요건으로 "방제수가 과다징수"라는 막연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방제수가의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한선은 여전히 "과다징수"로 불명확하게 표현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한선을 고려하여 상한선도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의2제2항제7호는 한국등산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으로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등산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문화의 확산과 등산발전" 가운데 "등산발전"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등산문화의 발전에 한정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반출금지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거리의 구체적 상한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산림조성사업을 신설하며 이를 위한 필요 재원을 녹색자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내용은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의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동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윤근 위원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우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근 위원 평소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우선 농해수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시급을 요하는 법안들입니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권오을 예.

○우윤근 위원 그리고 자구 체계는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식품산업진흥법안에 보면 식품 및 식품산업의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하고 유기가공식품 정의를 일부

수정한 것, 이것 동의하시면……

차관님!

○농림부차관 박해상 예, 동의합니다.

○우윤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농림부차관 박해상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다음에 벌칙, 공무원 의제 조항 이것도 명확히 하는 거니까 내용에 큰 변화가 없어서 전문위원 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농림부차관 박해상 예, 괜찮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렇다면 이 안들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시급하게 통과시켜 주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金命柱 委員 소위원이라고 너무 하시네.

○우윤근 위원 나, 모처럼 발언하는데 왜 그래?

○위원장대리 이상민 우윤근 위원께서 농수산에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여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요, 질의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박세환 위원 잠깐만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네.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간단히 해 주세요.

○박세환 위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등산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한국등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게 법률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서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전문 산악인의 양성 및 지원 사업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청장 서승진 근간에 등산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 활동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권 지역에서의 등산은 문제가 없는데 암벽등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전문 산악인 양성하는 것을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면 충돌되는 게 없습니까? 정부 안에서 다 의견이……

○산림청장 서승진 예,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조난 등산객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중첩적으로 소방방재청이나 경찰 이런 데와는 또 별도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산림청장 서승진 그것은 기왕에 법률 속에도 근거가 있고요, 또 소방청과는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악에서 조난자가 발생했다든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청에도 헬기가 있고 저희도 헬기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헬기가 출동해서 같이 협조적으로 응급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글쎄, 그러다 보면 협조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중에 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무부처가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업무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서승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같이 협조적으로 운영해서 국민들의……

○박세환 위원 김동철 위원님, 괜찮겠어요?

○김동철 위원 예.

○박세환 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것에 대해서 거리를 5㎞로 했습니다.

○산림청장 서승진 예.

○박세환 위원 발생지역으로도 5㎞ 이내의 범위를 반출금지구역으로 포함시켰는데 5㎞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반출금지구역이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거지요?

○산림청장 서승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박세환 위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산림청장 서승진 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옮기게 되는데 매개충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300m밖에 옮기지 못합니다마는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셀 때는 최대한 3㎞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일본이나 우리의 연구 결과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최대한으로 잡아 놨네요?

○산림청장 서승진 그렇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박세환 위원 최대한으로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서는 최소한에 그쳐야지요.

○산림청장 서승진 그러니까 최대한 5㎞ 범위 내에서……

○박세환 위원 저희가 알기에도 발생지역에서부터 잠재적인 발생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이 5㎞라고, 그렇게 넓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청장 서승진 바람이 강할 경우에 지금 3㎞로 학술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3㎞로 하든지…… 더 할 게 있는데 그만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상민 예.

○박세환 위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위원장대리 이상민 박세환 위원님, 그 범위를 상한선 5㎞로 하는 것도 상한선이 없어서 제가 5㎞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법안이 많아서 질의 종결을……

○문병호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무슨 법이요?

○문병호 위원 식품산업진흥법안입니다. 제정법이라 한번 물어보려고요.

○위원장대리 이상민 간단히 좀……

○문병호 위원 예,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는데 부칙 제2조·제3조에 보니까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법사위원회의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중호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으로 폐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마는 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법에서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제2조, 제3조에서…… 다른 법률 개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해서 몇 가지 법을 이 법 부칙에서 또 개정을 했는데 이것 원래 법사위에서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전문위원 임중호 제2조에서 이렇게 법을 폐지하는 것은 이 법이 그 법을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문병호 위원 다른 법률 개정은요?

○전문위원 임중호 다른 법률 개정도……

○문병호 위원 원래 법사위에서 부칙에다 이렇게 다른 법률 개정하는 것 안 하기로 원칙을 정했는데……

○전문위원 임중호 표현만 바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표현만 바꿔 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중호 예.

○문병호 위원 이것 맞습니까? 표현만 바꿔 주는 겁니까?

○전문위원 임중호 예, 본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엄격하게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표현이, 관련되는 법에서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

○위원장대리 이상민 소수의견은 아니시고 적극 찬성 의견으로……

○문병호 위원 하여튼 우리 법사위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폐지·개정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문제가 없다고 전문위원실에서 봤다 이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임중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못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령을 정할 때 국민들의 부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청장 서승진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관련 부처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산림청장 서승진 예,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언뜻 수긍이 잘 안 가는데요. 무슨 조난 등산객에 대한 구호 이런 것도 다 하겠다는데……

○산림청장 서승진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소방청도 도별로 1대 정도의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 같은 때는 사고가 다발되기 때문에 긴급할 때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헬기가 출동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부처 간에 협조적으로 지금 잘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서 제42항까지, 그리고 제44항 및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

46. 公有水面埋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정부 제출)

49.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정부 제출)

5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55분)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정부가 제출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의사일정 제49항 정부가 제출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6항 및 제4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48항에서 제5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왜 안 나오셨나요? 해외출장 때문에 안 나오셨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위원장대리 이상민 대신 해양수산부차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장관께서 2012 여수세계엑스포 유치활동과 개최지 결정 투표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 중에 있어 차관이 대리출석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은 양식수산물이 질병에 의한 폐사로 손실이 발생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외래질병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어 국내 양식장에서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입수산물에 의한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수산동물 질병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첫째,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산동물 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수산동물 질병의 방역과 수출입 검역을 위하여 수산동물 방역관과 검역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산동물이 질병에 감염된 경우 살처분이나 소각 등의 조치를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민 간사, 최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은 양식기술의 발달로 양식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실질적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식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첫째, 보험 대상 품목의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둘째, 보험의 대상과 보상의 범위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정부가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재보험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양식수산물 재해 재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투자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투자 대상 선박을 항행용 선박 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탐사 및 채취용 선박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선박투자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회사가 1척의 선박만을 소유토록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의 선박투자회사가 수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저희 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과도한 벌칙을 과태료로 바꿨습니다.

현행법 제28조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 등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에 대하여 20년 이내에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매립 목적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경미한 매립 목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41조의2제8호는 이와 같은 경미한 매립 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병괄ㄴ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매립 목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매립 목적 변경에 대한 원칙적인 법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한 벌칙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경미한 매립 목적 변경을 사전에 확인시키고자 하는 행정목적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과태료 요건과 같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있어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선원을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는 규정과 관련해서 그러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 부칙에서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 중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이 실시하는 검사에 따르지 않는다는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와 관련한 과태료 요건으로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과태료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벌칙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수산동물을 소각·매각하거나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칙의 구성요건으로 막연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 17조제3항의 의무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과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자구를 수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委員 해수부차관님, 공유수면매립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과 관련해 가지고 제안설명 넷째에 보면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로 인정되어 있던 관습상 인·배수권자를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 권리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법 제12조에 보니까 인수하거나 배수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차관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실무자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무자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수면매립법 제안설명 네 번째에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로 인정되어 있던 인·배수권, 어떻게 보호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장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집이나 바닷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바닷물을 끌어 쓰기 위해서 취·배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유수면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초 권리자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것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했다는데 어떻게 강화했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정부안에는 그렇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현행대로 그대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인·배수권자는 권리자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게 왜 법적으로……

그게 무슨 권리를 해 주는데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인·배수는, 공유수면권리자는 공유수면을 다시 매립을 하거나 그쪽을 사용할 때 권리자로 인정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보상을 해 주는 분쟁이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는 허가를 받은 자로만 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관습적으로 하는 자도 권리자로 인정하도록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려다가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 관습에 의하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인수하거나 배수하는 사람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냅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은 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관습적으로 설치한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그게……

바닷물이 국가 것이잖아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공유수면은 그렇습니다.

○金命柱 委員 공유수면은 바다이고,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화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상임위에서 현행대로……

○金命柱 委員 그러면 공유수면매립법과 관련해 가지고……

차관님! 이 법이 급한 법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의원입법 쪽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구 쪽에 관습적으로 횟집 하던 이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金命柱 委員 이 법이 그렇게 하더라도 현행법에 관습에 의한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배수권자를 권리를 가진 자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金命柱 委員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현행법에도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 관습에 의해서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29조 조항에 보면 1·2·3호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매립 목적 변경을 예외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팀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팀장이 잘 아실 테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3호에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립 목적 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적용례에 가서, 이게 개정되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2005년 3월 31일에 그렇게 예외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일반적인 적용례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최초로 매립면허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립 목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용될 수 없어서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위원님,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할 때 부칙에 항상 이전에 한 것은 적용하지 않도록, 종전 법의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종전에 보면 예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목적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도 명쾌히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99년도하고 2005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목적 변경을 할 때는 투자 재평가를 해서 목적 변경에 따라서 지가상승률만큼을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가 환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칙 조항이 명쾌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종전의 부칙을 개정하기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현행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사업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종전 법에 따라서 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주변여건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목적 변경을 해 주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정법의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가 적용 안 되어 가지고 좀 불합리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사례들이 좀 있지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갔었는데도 부칙에서 이렇게 한 것은 맞다고 해서 쟁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차제에 이것을 개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그런데 종전의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는 좀……

○이주영 위원 종전의 부칙도 불합리하면 개정할 수 있지요.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종전의 매립면허를 받은 데의 투자이익을 환수를 못 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이익이 면허를 받은 사람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 경우는 인가 관청에서 그런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허용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서 또 그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변경이 안 되는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이것도 손을 볼 수 있으면 손을 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논쟁을 자꾸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문병호 위원님.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인데요. 마찬가지로 부칙에 타 법에 대한 폐기 개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정확히 검토가 됐나 묻습니다.

여기는 폐기물처리법인가 뭐 하나 개정이 됐네요. 그런데 그것은 타 상위 법안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별문제 없는 겁니까?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도 그렇고 오늘 제정법들이 다 11월에 제출이 되었어요. 금년 11월에 제정법이 제출되어 가지고 불과 보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농해수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대로 됐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부칙조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도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적절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중호 일단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다 협의가 된 내용 또 표현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서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무슨 검역 불합격품이라든가 수산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처벌조항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위원 임중호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병호 위원 부처 간에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법사위의 심사 원칙상 맞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죽 해 왔듯이 부칙에다 다른, 더군다나 타 상위 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뭐하고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委員長 崔炳國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소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급한 법안입니까?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이것은 조금 늦어도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그 법안은 지금……

○우윤근 위원 제가 그 법안을 농해수위에 있을 때 했었는데……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주세요.

○委員長 崔炳國 우윤근 위원 말씀하세요.

○우윤근 위원 문병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적절합니다. 법사위의 원칙이 부칙에서 타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 원칙상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늘상 법사위원회에서 있어 왔던 일이고 제가 2년 전에 있을 때에도 늘 그런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관련법을 다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양해를 해서 넘어온 것이……

법사위의 관행인데 방금 그 법령은 저도 농해수위에 있을 때 그 법을 가지고……

그런 지적을 제가 늘상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해수위에 있을 때에도 '부칙으로 타 법을 개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조항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편의상 타 법령을 개정하려면 다른 법을 다 각 부처마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서……

그게 지금 통과되어야 될 법 아닙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인데……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해양수산부의 금년도의 가장 중점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우윤근 위원 그래서 그것은 주의 촉구를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좀 전에 하나 김명주 위원이 적절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것도 팀장께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현행법하고 개정법하고 제안설명 내용이 저도 수긍이……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로 인정되어 왔던 관습상의 인·배수권자를 합리적 기준 없이 이렇게 해서 전반적 권리를 강화했다 이 설명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기존 법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우윤근 위원 기존 법하고 개정법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말만 풀어서 한 것이고

요. 12조에 4호 이것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것만 추가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런데 마치 관습법상 이게 들어감으로써 전반적인 권리가 강화되었다 이 설명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만, 새로 추가된 것은 그것 하나 같은데, 나머지는 현행법하고 똑같은 것이고?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관습법을 폐지하려고 정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농해수위에서 그것을 폐지하면 안 된다, 현행대로 조치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사위에서……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 같아요. 기존 법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우윤근 위원 그런데 그대로 유지하고 개정된 것은 4호가 들어간 것……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우윤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법 놔두어도, 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김명주 위원이 질의를 적절히 했지만 이 법체계나 자구하고는 관련 없이 그 조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우윤근 위원 그런 것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소위에 넘길 사안은 아니고 또 넘겨서 언제 하겠습니까? 정기국회 내일 모래 종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세환 위원 연말에 아마 국회가 또 열릴 것 같은데.

○우윤근 위원 그런데 농해수위에서 법안 이 조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사위에서 다루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환 위원 위원장님, 저도……

○委員長 崔炳國 그래요,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 차관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애당초 정부안보다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범위가 축소되었어요. 수산질병의 원인을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바꾸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재해보험법안은 사실 질병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상임위의……

○박세환 위원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그래서 양식의 질병까지 전부 재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너무 보상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질병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상임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태풍이라든가 홍수 져 가지고 그때 유입되어 가지고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포함되게 해 달라 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질병 이것만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리고 재해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이상조류·적조' 이렇게 예시를 해 놓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재해의 범위에 어떤 신축성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박세환 위원 이것으로 재해가 다 망라되는 것입니까?

만약 이상난동이라든지 기온이 하여튼 이상기온 이런 것으로 해서 폐사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그러면 재해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그래서 대표적인 재해로 되는 사항을 법률에 열거를 했고요. 더 재해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또 아까 자연재해로 인한 질병도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그러한 질병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발생빈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적조 등 해서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박세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신축적으로 나중에 대통령령을 정할 때 재해의 종류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 외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병호 위원님 그리고 박세환 위원!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 또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자고 했습니까?

(「그냥 넘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金命柱 委員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에……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세 분들은……

○金命柱 委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차관님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습에 의한 인수·배수권이 기존의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金命柱 委員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인수·배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현재……

○金命柱 委員 어떤 식으로?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추후 허가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만 지적하고……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통과시키자?

○金命柱 委員 예, 달리 의견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차관한테 물어보고요.

○委員長 崔炳國 어느 것이요?

○문병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칙에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넣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문병호 위원 그게 정부 입법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개정안을 내든가 하지 왜 이렇게 부칙에다가 넣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환경부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 때문에도 개정법률안을 내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요. 실제 폐기물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의의가 없기 때문에……

○문병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내용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입법 형식을, 그러니까 그것은 환노위 법안이니까 환경부가 입법 발의를 하고 이대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냥 통상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왔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타 법에……

○문병호 위원 오늘 그냥 양해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더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십시오.

○委員長 崔炳國 예, 소관 법안을 개정·폐지할 때 타 위원회 법안이든지 다른 법안을 부칙에서 개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이은 예.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서 제5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가지만 더하고 바로 오전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미경·천영세·박성범·류근찬·한광원·장

복심・정종복・김덕규・노현송・이계진・정청래・노웅래・이광재・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권영길・우상호・박찬숙・강혜숙・김재윤・서재관・이광철・윤호중・강기정・김태홍・신기남・문병호・조정식・이낙연・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재건・변재일・우윤근・김낙순・염동연・조일현・이근식・강봉균・최용규・이종걸・장경수・양형일・우제창・우원식・진수희・김영주・노회찬・최순영・단병호・우제항・이강래・제종길・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

(12시27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53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51항 및 제5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선병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선병렬 국회운영위원회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 여러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28일 공포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통령당선인은 지명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의 실시를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관계법상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등과의 법체계상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관계법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개정안도 국회법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동법 별표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근거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 근거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개정안은 기 발효 중인 법률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제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각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

문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별표1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형식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2007년 1월 19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동법의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정은 매년 1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를 명백하게 관철하려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崔炳國 예,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조항을 두지 않으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취지지요? 이 취지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기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설치되어서 실제 저기는 내년부터입니다.

○박세환 위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맞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운영이 되고 있으면 위법한 상태에서 특별회계가 설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운영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원래 정부안에서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폐지된 상태로 국가재정법이 의결되었는데 그 의결된 이후에 교통시설특별회계가 3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또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때 아까 조문 관계상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수정을 못 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동시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여하튼 좋습니다. 법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따른 어떤 잘못이 있었다 이런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 와서 추인하는 식으로 법률이 개정되려면 기왕에 위법한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지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소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입법 불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환 위원 죄송하다는 것만 갖고 안 되고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이 부분이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박세환 위원 지금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고 법을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장관님? 그러면 당연히 그 잘못을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세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소위에 넘겨서 어떻게 그동안 조치가 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위법한 상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종전부터 기왕 시행되어 왔던 특별회계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그게 국가재정법에는 전혀 근거조항이 없었을 테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특별법이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국가재정법이라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소관하는 그런 법률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하셨어야지.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박세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조문이, 이런 특별회계나 기금들이 꼭 정부입법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도 많이 설치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국가재정법은 작년 9월에 통과가 되었고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2월 연말이 통과가 되면서 정부입법으로도 이 부분을 개정안을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 ……

○박세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아니, 기왕에 잘못된 점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동안 잘못을 어떻게 조치 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委員長 崔炳國 박세환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검토……

○박세환 위원 예, 2소위로 넘겨주십시오. 제가 좀……

○委員長 崔炳國 예, 문병호 위원님!

○문병호 위원 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 KBS가 여기서 빠지게 되면 종전에 KBS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가 있으면 임명권이 예산처장관에게 있는 겁니까, 사장 임명권이?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아닙니다. 특별법에, 지금 저희들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공공기관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임면에 관해서 일체 관여하는 조항이 없고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일부하고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 권한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KBS는 아직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임면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병호 위원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의 합의로 통과가 되었고 정부발의 법안이 아닙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어떠세요? 정부 입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이 그때그때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지정 고시할 때 특별한 필요성을 봐 가지고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서 제5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통일외교통상부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시 관계 장관님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보류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지금 차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제1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炳國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5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2.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유기준・유승민・고진화・배일도・이계경・엄호성・정문헌・김정훈・최경환 의원 발의)
63.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김명자・김영주・김춘진・민병두・우윤근・이계안・이미경・이영호・정의용・최재천 의원 발의)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종걸・이광철・송영길・김태년・변재일・이미경・박상돈・고희선・강길부 의원 발의)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55항에서 제6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죄의 신설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규정된 보험사기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고 벌칙도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하며 입증책임도 동일하므로 보험사기죄를 보험업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는 사기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죄는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근거 규정

도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경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를 폐기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보험사기죄 관련 규정은 삭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계부처는 현행 보험업법 제162조에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과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규정만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는 제4장 "모집" 중 "보험계약자의 권리" 편에 규정되어 있는 등 현행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조 신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법은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목표규모제도를 도입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 주려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 정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일부 자구 정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간단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직권 검사 사항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자의 업무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의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취지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이 직권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일부 구체화하였습니다.

나머지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요건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개인·법인 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의 사항은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 등이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법 특례 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농지 전용에 관한 특례를 두면서 "농지를 전용하거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협의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협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 주무부 장관 등과 농림부장관 사이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등 현행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간단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형식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법률 제8527호 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밖에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방식으로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외에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개정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개정안은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외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이나 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그 방식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법문 표현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법률용어에 관한 건데요, 공중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6조1항에 보면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 "정"이라는 말도 법률용어를 '사실' '그런 사정' 이렇게 했는데 "정" 이걸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이상민 위원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것 어떻게 고쳤습니까? 지금 고쳐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몇 조입니까?

○이상민 위원 법률안 제6조1항……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 "정을 알면서"는 지금 법 용어를 고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이상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이를 "권유하거나 요청한 자를" 이게 범죄 구성요건에 적합한 개념인지 살펴보셨습니까? 권유 또는 요청.

그리고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것과 또는 이를 권유, 요청한 것이 가벌성이 같은 건지…… 이건 뭐 전체적 결단이 문제겠지만 권유, 요청한 게 법률용어인지 이게 확신이 잘…… 낯섭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좀더 제가 살펴본 다음에 박세환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험사기 유형을 보험업법에 신설해서 편입시키겠다 이런 취지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보험사기에 대한 어떤 유형이 일반적인 그런 사기죄에 있어서는 사기죄보다는 조금 달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 금액이 커진다든지 이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왜 이것 좀 조정을 안 해 놓으셨나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도 현재 형법상 동일한 양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사기 처벌조항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제고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양형이 또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경위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현행 형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처벌규정을 만드는 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런 측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심각한 보험사기 규모,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보험사기 정의라든지 금지규정만이라도 존치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보험업법 162조에 보면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금감위가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정의라든지 금지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게 실익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 부에서 또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 내용 중에……

○박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험사기의 특징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를 피해자로 하지만 실제적인 피해자는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기죄와는 조금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는데 당연히 금액이 커지면 더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당연히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도 훨씬 더 죄질이 나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왜 고려를 안 하셨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소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입니다. 이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데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을 하는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현재는 하지 않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박세환 위원 할 수 있게 하는데…… 아니, 그런데 차관님, 이게 지금 고액권을 우리가 10만 원짜리 화폐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표가 대부분 보면 자기앞수표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 너무 뒷북치기 법 아닙니까? 이게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의원입법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고액권 문제가 결론이 난 것은 좀 뒤였었고 이것은 진작부터 논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양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고액권이 발행되기 전에 자기앞수표 발행이, 이미 지금 다른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는 발행이 되고 있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예금업무를 하고 또 여신업무를 하는데 이용 고객들의 편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현재 법사위에 제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경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고액권 발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판인데 이런 식의 법률적인 정비로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게 과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변경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암만 의원입법이라고 그래도 일단 하여튼 해당 상임위로 통과되어서 왔으면 일정 부분……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저희는 그래 가지고……

○박세환 위원 어떻게 할까요? 이것 좀 한번 심도 있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좀더 소위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소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박세환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좀 추가로……

○委員長 崔炳國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대안)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 제안 이유가 경제자유구역의 그동안의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미흡해서 보다 더 완화한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할 때는 그런 당초에 상정했던 정책목표가 있을 테고 그게 자꾸 예견된 그런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든지 다른 방도를 통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제도의 어떤 절차상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완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가 없고 임시적 땜질 식 처방이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구역을 설정해서 일반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나 사람들에게 또 사업자들에게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유리한 최조건을 제시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정책 분석을 해 보셨어요,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게 뭔지? 이렇게 완화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국병원의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해서 추진할 때하고 상황이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개발절차 간소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대만 하실 게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러니까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민 위원 분석을 했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그런 상황들을 지금 정리들을 하고 있지요.

○이상민 위원 아니, 정리를 이 법안이 나오고 나서 정리를 하면 됩니까? 정리가 된 원인 분석을 근거로 해서 법안이 마련되어야지. 그리고 이것이 왜 정부안도…… 이것 정부가 제출한 거예요?

○주성영 위원 의원입법이야.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KIEF에서 그동안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난다고 판단이 섰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입법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낸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당초에 상정했던 그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규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방안을 내야지 언뜻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여튼 그런 점만 좀…… 주성영 위원께서 이걸 통과를 간절히 요망하신다니까 하여튼 그쯤 지적하고 재경부에서 각별히 좀 분석을 제대로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유념해 가지고 좀더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다음에 증권거래법 개정안인데요, 그것 보면 법률안 189조1항, 192조제1항에 관한 건데 이것도 외국법인에 대해서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 배제합니다. 이게 또 형평성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부딪치는데 이를 달리해야 될 특별 사정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것 주권상장법인이고 코스닥상장법인 중에서 외국법인인데 이 정도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외국법인을 이렇게 특례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외국법인들은 그 해당 국가의 본국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 투자자 보호제도는 외국법인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규제가 있다면 내국법이나 외국법이나 상법은 국제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능하면 어느 나라나 차별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공통적, 일반화되고 있는 게 추세인데 왜…… 더구나 이 외국법인이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투자기업도 아니고 주권상장법인이고 코스닥상장법인이에요. 우리나라의 소액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왜 특례규정을 하는지, 특례규정을 제한하는지 그 특별 사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 부분은 외국법인들한테 상법상 어떤 특별 규정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그걸 외국법인에 적용할 경우 양국 간의 법률 차이에 따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제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이것은 뭐 빨리 통과시켜야 될 그런 필요 없지요? 그건 아니지요? 증권거래법, 신협 이것은 2소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보

면……

○박세환 위원 차관님한테 여쭤 봐야지. 빨리 통과되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이상민 위원 차관님, 아까 증권거래법 한번 소위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판단을 해 주시면……

○박세환 위원 급한 거면 급하다고……

○이상민 위원 시급한 법은 아니지요?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법률안 23조에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말이, 법문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누구 주무 책임자가, 국장이 답변하시지요.

국장이세요?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보험제도과장 박영춘 과장입니다.

○이상민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보험제도과장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입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바일로 신용카드를 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입력할 때 유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개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때의 비밀번호는 여러 형태의 비밀번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어떤 정보 제공의 안정성이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법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얻는 방법을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이라는 겁니까?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보험제도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서면에 의한 방식하고 그다음에 전자공인서명, 두 가지 방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모바일로도 동의를 하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 가지 편의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여기 "등"은 뭘…… 그러니까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상정하는 겁니까?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보험제도과장 박영춘 예를 들어서 ARS나 여러 다양한 기술 발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전문위원, 이것 보험사기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용어가 너무 조악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보험사기행위를 하는데 가, 나가 중첩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이게 병렬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건지, 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수령하고자"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이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상민 위원 심사가 좀 필요하지요? 용어가 좀 조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험업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증권거래법하고……

○委員長 崔炳國 보험업법, 증권거래법하고, 박세환 위원님은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했습니까?

○박세환 위원 신용협동조합법……

○이상민 위원 아니, 이것 "권유하거나 요청한" 이것이 범죄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권유 또는 요청이 구성요건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상민 위원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차관님, 공중 협박 등에 관한 자금조달행위 여기 죄명 중에 구성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고 법률용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2소위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 등 협박……

○박세환 위원 이것은 뭐 협약과 관련되어서 급하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민 위원 어떤 것?

○박세환 위원 말씀들을 못 하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지금 이 테러자금금지,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사실은……

○이상민 위원 급합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저희가 FATF 가입 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법이 106개의 에그몽그룹……

○박세환 위원 자구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상민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급하다고, 제가 언뜻 봐도 좀 급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하되 전문위원께서 지금 내가 지적한 것 있지요? 이것을 법률용어에 맞게끔 고친다는, 이 취지에 맞게끔 고친다는 전제하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것은 그렇게 자구수정 하세요.

○박세환 위원 저한테도 알려 주세요.

○이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5항, 제57항, 제6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제58항, 제59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6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명주・김석준・김양수・김재경・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 의원 발의)

66.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6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68.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7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71.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영세・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72.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주호・진수희・한선교 의원 발의)

73.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군현・한선교 의원 발의)

74.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권철현・김석준・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인기・이주호・진수희 의원 발의)

75.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이성권・곽성문・차명진・이주호・한선교・최구식・엄호성・이재오・박형준 의원 발의)

7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5분)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정부가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65항에서 7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7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존경하는 최병국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 가입을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카지노사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포탈 목적 자금세탁 행위의 범위를 현행 외국환 거래 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외에 원화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중협박자금 조달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65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71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 7개의 법률안은 보험업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함으로써 임원 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등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면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체계 및 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2항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5항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이 4건의 법률안은 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해당 기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그 실효성을 상실해서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계 및 자구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이른바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범죄수익규제법의 규정과 체계를 맞추는 등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한 내용은 주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법률의 대부분을 보니까 금융감독기관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이런 것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또 이를 통보받은 여러 금융기관의 장들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렇게 신설을 죽 한 거예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박세환 위원 입법 형식이 이런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권한을 규정한 것이면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법이 지금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박세환 위원 무슨 법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금융감독……

○박세환 위원 그 법에다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또는 종합금융회사, 신탁업, 은행, 금융지주회사 이런 데 임직원에 대해서 비록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재임 중 비위 사실을 가지고 통보할 수 있다 이런 권한 규정을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개별 입법에다 이렇게 다 흩어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지금 아마 보험업법하고 기존의 법, 이를테면 큰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박세환 위원 그래도 권한인데,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에 관한 법을 딱 보면 아, 무슨 무슨 업종에 대해서는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재직 중에 비위 사실을 저지르면 비록 해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를 받은 업소에서는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해당 임직원한테 통보해야 된다라고 큰 규정 두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런 입법형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개별 입법에다 쫙 흩어놓는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이 법 하나하나를 다 소위에 회부해서……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박세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감독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기록유지 관련은 당연히 감독기구에 관한 법률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결격사유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증권거래법하고 보험업법에도 이러이러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하는데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있었더라면 해임이나 면직될 수 있었던 자격들에 대해서 소급해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서 지금 개별법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에 대한 법이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지금 이것이 임직원들의 자격과 관련되는 것이지 감독기관의 권한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별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유지나 이런 것들은 감독기구가 개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박세환 위원 아니, 자격을 논할 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다 해임되고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그런 비위사실 통보인데 그것이 무슨 자격요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내용을 보시면 이미 퇴직한 자라도 그 자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만약에 어떤 제재를 해임이나 면직을 받았을 자라면 그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자격 문제입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그것을 보면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두는 것이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근거가 아니고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지요.

○박세환 위원 이것 수정이유에 그것이 다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것을 흩어 놓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이미 증권거래법 33조하고 보험업법 13조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저는 하여튼 이것은 비록 퇴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차후라도 퇴직한 회사에다 통보를 할 수 있다, 다음에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 해당 임원한테도 알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이것

은 무슨 자격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퇴직한 사람들인데 자격이 무슨 소용 있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근거는 감독기구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개별법별로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한 안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금융기관에 개별법에 있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종금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신탁업법상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조항들을 다 집어넣겠다는 것이거든요.

○박세환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委員長 崔炳國 박세환 위원님, 소위에 넘겨서 하지요.

○박세환 위원 넘기려니까 법이 그러면 다인데 미안해서 어떻게 다 넘기라고 그래요?

이상민 위원님, 이것 좀 한번 잘 살펴 보세요.

○委員長 崔炳國 이상민 위원님, 어떻게 이 법안 소위에 넘겨 가지고 다시 심사할까요? 소위에 넘겨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지요.

○이상민 위원 예, 그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위원장님, 7개 법안에 대한 것만 좀 넘겨 주시고 나머지 것은……

○委員長 崔炳國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에서 제 71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2항에서 7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강창일・양형일・제종길・홍미영・안홍준・윤원호・이목희・우원식・장향숙・배일도 의원 발의)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1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조성래 위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정부가 제출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정부가 제출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정부가 제출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여섯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7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78항에서 제8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규용 환경부장관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되어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영산강·낙동강 등 3대강 수계법은 첫째,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국책사업 등의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수변구역 내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면서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하천유수 사용자를 부과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물 사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거의 없어 별도의 면제확인 절차 없이 유해성 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취급제한물질과 동일하게 관리되었던 취급금지물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시약의 수입 또는 영업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그간 관계 부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률안들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자 등에 대한 필요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 취소, 효력 정지,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시험을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같은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부칙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각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수계의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인·허가 의제와 관련한 법률안 제26조와 관련하여는 한강수계법의 내용과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였고 그리고 안 제30조제3항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외 조항도 한강수계법의 내용과 내용을 맞추어서 정리했습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제14조의2, 제27조, 제36조는 필요적 지정 취소와 임의적 지정 취소, 영업 정지를 한 조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로 나누어서 다른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4조제3항은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와 별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영업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의 노동부장관의 승인과 본 개정안 제34조제3항의 영업 허가는 그 취지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제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 취급금지물질 수입 허가 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안 제33조제3항은 취급금지물질에 해당

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 법 제33조제3항 소정의 수입 허가도 취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으로 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命柱 委員 제가 할까요?

○委員長 崔炳國 예,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命柱 委員 장관님,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여기의 제14조(과징금)과 관련해 가지고 신설된 조항에 보니까 이게 다른 수계법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과징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3항을 신설해 가지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도입되었는데 이 도입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과징금 산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항에 의해서 현행도 환경부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 처분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환경부령은 현행에도 감경 조항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제처의 법령 정비 대상으로 가중·감경하는 경우의 권한은 적어도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야 된다 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金命柱 委員 대통령령이 법률로 올라온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환경부령이 법률로 옮겨온 것입니다.

○金命柱 委員 지금 이렇게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환경부령에도 있는데……

○환경부장관 이규용 현재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서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다?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런 의미입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예.

○金命柱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환 위원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다음,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장관님 말이에요. 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보면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적으로 인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의적으로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종전보다 세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임의적인 인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죽 이렇게, 한 스물네 가지를 이런 식으로 죽 열거를 해 놓았는데 이게 종전에는 시행령에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조문 11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정비 차원에서 이 법에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에서 이러한 취소 처분 등을 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다 들어가 있겠지요? 하나도 빠지지 않았겠지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지금 다른 법에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 조문에 대해서 기타 이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항상 불가 예측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사실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에 좀 포괄적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법에

근거를 두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서 일부 명하는 어떤 조항을 두고 위반되면 처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그런 말씀 취지에서 되어 왔었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열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상 저희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이렇게 열거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글쎄.

글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법으로 다 미루면서 말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그냥 면책성의 그런 것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다 미루어서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우리는 꼼짝 못 하고 할 수에 없습니다'라든지 '그것 말이야. 법 고쳐야 되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이런 식의 면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것 아닐까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이규용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박세환 위원 거꾸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오히려 지금 여태까지 그 옆의 종전에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것들을 이렇게 명확히 해서 이것으로 인한 처분을 받는 사람들의……

○박세환 위원 이 법 또는 이 법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환경부장관 이규용 이것은 다 취소를 했었는데 그 사유를 이렇게 열거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이 보다 기본권 보호에……

○박세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입니다, 지금 스무 가지 경우가 있어요. 스무 가지가 있는데 보면 행정 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또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공사의 중지도 명할 수 있고요.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할 수도 있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호에 위반되면 이것 중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정 공무원들한테 맡겨져 있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렇게 되는데 대개 이 행정 처분 기준은 부령에 의해서 다 일일이 영업정지 1개월, 경고 6개월, 취소, 이런 것들이 양태·위반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박세환 위원 시행규칙에 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통상 그렇게 됩니다.

○박세환 위원 글쎄요.

○환경부장관 이규용 그래서 재량권 남용을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8항에서 제8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8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

은영・유재건・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89.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1.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28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5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7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8항 신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정부가 제출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3항에서 제8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90항 및 제9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개 법률안은 모두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하여 가지로 분화된 법조항과 삭제되고 누락된 법조항을 순서대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 금지 사유에 신체조건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 형식에 맞추어 부칙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 개정 형식에 맞추어 부칙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3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법조문을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안 제53조제4항제6호와 관련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리한 조치”라는 이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 정도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과 관련해서 개정 형식에 맞추어서 제2조부터 제5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정원 2%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에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 제11조제4항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업노무사가 결격사유 있는 직무보조원을 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업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토 결과 노동관서장이 개업노무사에게 직접 그 해임을 명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개업노무사가 결격사유 있는 직무보조원을 채용한 경우에 이를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개업노무사가 직무보조원 고용 시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고, 채용한 경우에도 해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들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는 법 개정의 형식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命柱 委員 제가……

○委員長 崔炳國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命柱 委員 노동부장관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27조에 지금 현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 이상, 즉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3%로 옮긴 것인데 지금 현재 2%로 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이 2%는 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공공 부문은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공공은 넘어섰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金命柱 委員 그래서 지금 3%로 1%를 늘리는 것인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공공 부문은 저희들이 보니까 2.48%입니다.

○金命柱 委員 그러면 0.6% 정도 더 고용하게끔 하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3%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고용을 못 하면 제재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 보며)

민간 부문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정부 부문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金命柱 委員 부담금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만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표해 가지고 그냥 불이익을 주는 것만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한번 심사하다가 문제가 좀 되어 가지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민간 기업과 달라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표해서 그 기관의 어떤 명예감에 호소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2%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48%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로 해도 별달리 문제가 없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민간인 기업에 대해서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金命柱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좋은 입법취지니까 이게 잘 시행되도록 장관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金命柱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과 제84항, 제86항, 제89항 및 제9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5항, 제87항, 제88항 및 제9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92.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우남·안상수·안민석·김현미·김영춘·정청래·백원우·문석호·박상돈·이미경·강혜숙·김원웅·김낙순 의원 발의)

93.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광철·강창일·민병두·정봉주·안민석·김태년·최순영·이인영·김희선·이인제·서갑원·김낙성·곽성문·김송자·문희상·유재건·박상돈·최규성·김교흥·김영숙·이경숙·문학진·최재성·이미경·정병국·제종길·이계경·유필우·김용갑·이계진·엄호성·김학송·이재오·전병헌·이낙연·김원기·김근태·손봉숙·강기갑·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이영순 의원 발의)

94.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9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92항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의사일정 제93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5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92항에서 제9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9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법 문장과 용어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문장 구조도 일상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초·중등학교에 학교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구 및 조문정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사료 및 한국사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열람·복제·수탁·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사료 수집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구 및 조문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의 등록·신고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한편,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만 법률안 28조2항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격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5조에서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독학학위검정원의 기능을 위탁하여 독학사 시험의 출제·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을 단순히 정리하는 타 법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9조1항·2항·4항과 관련하여, 안 9조1항에서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8조2항에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12조에서는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폭력대책을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하는 이 법의 취지와 지휘·감독의 체계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도 시도에 둘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두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지역대책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우선 대체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낸 법안들을 보니까 한글화 법안들이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뒤에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범정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지금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법률 용어를 조금 더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한자로 돼 있는 것을 한글로 그냥 표기하는 것, 대체로 그런 법안들이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한글로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글로 하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은 손상시키지 않고요.

○이상민 위원 이 법안들은 그러면 어떻게 골라서 이렇게 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법제처에서 주도하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가 죽 여러 부처의 법을 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그 작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다른 부처도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만 그런 게 아니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다른 부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한글로 표기한 대부분에서 이렇게 법안을 한글로만 표기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려웠던 법률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상민 위원 생경한 용어들을 가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법제처에서 좀 소홀한 것……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왜 안 바꿨나요, 제목, 법명은? 이것도 이왕 개정안이 들어오면 다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제목?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필 이것은 저희가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일괄해서 지금……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원래 한글로 다 바뀌었어요, 법 내용은, 법문은. 그런데 제목만 딱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강경필 예, 바꿔 놨습니다.

○이상민 위원 바꿔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아마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법명은 아래에는 바꿔 놨고요, 검토보고서만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바꿔서 통과시키도록 하고요.

다음에 법률안 중 13조는 삭제한 것입니까, 전부 다? 어떻게 고친 것입니까, 수정안으로?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필 무슨 법 말씀이십니까? 사료수집 말씀이십니까?

○이상민 위원 예.

○전문위원 강경필 사료수집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여기 지금 원안과 수정안이 달리 돼 있어서…… 수정안은 1항은 삭제되면서 2항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경필 이게 교육부의 수정안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께서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13조, 법률안 1항은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만들면서…… 왜 이렇게 고쳤습니까, 수정안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제가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금 더 상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13조 수정안 1항을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및 단체 등이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사료의 수탁·보존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서 수탁·보존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이런 사료들도 수탁·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수탁·보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를 수탁·보존할 수 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수탁·보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수탁·보존하니까 수탁·보존하는 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각자 소장하고 있는 사료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수탁·보존을 해 달라라고 할 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요청한 경우로……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문이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보존을 요청한 경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볼 때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사료까지도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거쳐 수탁·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달리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개인 재산권에 대한 것이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그 대조표를 만들면서 그 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당초 원안에는 2항에 '개인 및 단체가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보존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항을 다시 수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넣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래 놓고 또 "개인 및 단체 등이",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도 또 개인과 단체가 요청한 것도,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조문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단체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보존을 요청한 경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각자'라는 표현을 넣으면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으로도 이 뜻이 국가가 요구하면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보신다지만 일반 국민이 보거나 또 집행기관이 볼 때는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전문위원, 그것을 좀 보충하시지요.

○전문위원 강경필 예, 보충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단체 등이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보존을 요청한 경우' 이렇게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그렇다면?

취지가 그거라는 얘기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게만 넣으면 지금 뭐, 그것만 추가해서……

○委員長 崔炳國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 고칠 수 있지요?

○전문위원 강경필 예.

○이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위원님!

○선병렬 위원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요, 평생교육진흥협의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진흥원.

○선병렬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아주 이게 조직처럼 시·군·구까지 이렇게 조직화하는데 외국에도 이렇게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조직을 갖는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위별로, 이를테면 영국은 카운슬이라는 것을 두는데 중앙에 카운슬이 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시도에 있고 또 로컬 레벨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식입니다.

○선병렬 위원 지금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다양하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경쟁적으로 정착돼 나갈 기미가 보이고 그러는데, 완전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런 조직을 관료조직처럼 이렇게 짜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평생교육의 틀을 완전히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과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서 평생교육의 시스템이 완전 관료조직화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성, 방향 이런 것에 종속될 그런 우려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특히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조직들이 악용돼서 필요 없는 정치적 논란이 되고 교육의 다양성은 많이 훼손되고 자발성도 훼손되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요것은 그게 아니고요, 선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역사회에는 학교·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 또 도서관·과학원 이런, 말하자면 평생학습을 위해서 활용될 많은 기구와 단체·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산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말하자면 교육 프로그램을……

○선병렬 위원 아니, 그런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왜 협의해서 조절하고 다듬고 획일화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말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니, 그것은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서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그런 기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종속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자생단체 이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재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생단체나 이런 데가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에 300만 원 500만 원 아주 적은 돈을 지원을 받더라도 그 단체 운영에 있어서의 재정적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자율적 운영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협의회를 쫙 조직적으로 둬서, 물론 진흥원 같은 것을 둬서 국가가 각 일어나고 있는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다 연구 검토해서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이 협의회를 딱 두어서 이렇게 조직화한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성 이런 것에 맞나요? 지금 학교교육 같은 것도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이게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교육……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한 80여 지자체에 이미 학습도시라고 하는 형식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교육청 또 지자체장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협의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생적으로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고 현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무슨 관료주의적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자발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강조·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더 잘 추동해서 지원·육성하기 위한 취지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작위적으로, 관료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평생교육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는 것보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평생교육,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직선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역의 동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되고 이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걱정은 하셨나요, 이 법을 논의

하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물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도 여러 시민단체나 기관들이 상당히 의식이 고조돼 있어서 옛날에 60~70년대식으로 어디서 주도한다고 끌려다니고 이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구하셔서 정말 평생교육이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委員 교육부총리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金命柱 委員 제5조 보면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 문제는 누가…… 의무규정인데, 설치하여야 한다니까, 누가 설치하여야 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이것은 시·도교육청, 말하자면 교육감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金命柱 委員 설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런데 적어도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교육부도 계속 이것 지원사업을 해 왔고요, 어느 학교가 도서관을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법의 취지는 지금 초·중등학교에 학교마다 독립된 건물로서의 도서관을 짓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그런데 도서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제5조 요게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의 주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무의 주체를 규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이것.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님, 지금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난 2003년인가에 시·도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미 교육계에서는 이것은 시·도교육감의 역할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서 이것,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경필 예.

○金命柱 委員 이것 제5조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있는데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그래서 이게 법률 형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도교육감이면 '시도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덜렁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시·도교육감' 이렇게…… 본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초·중등학교는……

○金命柱 委員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소위원회……

○박세환 위원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 위원 부총리님 말이에요, 이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법이 본래 87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저는 이 법을 법 제명만 죽 보고는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은 말이에요, 사료의 보존을 위한 어떤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법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법의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두고서 이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죽 사료도 수집하게 하고 또 한국사 편찬도 하게 하고 또 한국사의 보급에 대한 그런 업무도 죽 맡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률 제명을 당연히 무슨 한국사편찬위원회법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알기 쉬운 것 아니에요? 사료의 수집과 보존에 대해서 일반적인 책임은 모든 국가기관이 다 가지

고 부담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박세환 위원 어때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자성을 유지하고 그러는 것은 그간의 우리 고유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지켜오면서 또 이런 기록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그런 것에 정말 굉장히 많은 공헌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덜커덩 국사편찬위원회만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법 제명을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가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으니까 국사편찬위원회법으로 바꿉시다. 이것 국사편찬위원회법 외에는 다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앙학술연구—과거에 정문연이라고 하던—에서 역사사료 수집, 보존 이런 업무를 많이 점점 확대하고 또 최근에 지난해에 시작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중심은 국사편찬위원회이지만 그런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기관이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기관으로만 한정하면 그런 데에서 하는 업무를 다시 또 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는 전혀 근거조항이 없어요.

실무자들 어떻습니까? 나와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국사편찬위원회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사료의 수집이라든지 보존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 법 제명을 그런 식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 민병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 민병관입니다.

본 법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근거법입니다. 다만 법명을 이렇게 한 것은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기존법의 법명을 살린 취지로 이렇게 법명을 그대로 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법을 국사편찬위원회법으로 하면 다른 기관들의 연구활동이라든지 사료수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법이 아닙니까? 여기에 동북아역사연구회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마치 국사편찬위원회만 사료의 수집과 보존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기타 나머지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법은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은 국사편찬위원회법인데 왜 이렇게 슬그머니 엉뚱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하여튼 이것 좀 소위로 넘겨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박세환 위원 이 법은 하여튼 국사편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져 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초기에는 국사편찬위원회만 그런 활동을 했고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또 중앙학술연구원이나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른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국사편찬위원회법으로 하면 관련된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세환 위원 이것은 또 이렇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인가 그 법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학교도서관에 관한 그런 법을. 이것은 지금 도서관법에서 또 분리를 시켜놨어요, 학교도서관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것 말을 많이 듣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국사편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 국사편찬위원회의 법 하나를 완전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국사편찬위원회법이라고 하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든지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을 통

해서 여기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보니까 전부 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떠어떠한 권한을 갖고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약에 국사편찬위원회법으로 고친다면 새로운 법 제정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이 됩니다.

○선병렬 위원 아니, 지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법명이 바뀌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아닙니다. 있던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선병렬 위원 이 법명은 그대로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선병렬 위원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개정안 아닌 것을 가지고 논의……

법명이 뭐였었어요?

○박세환 위원 법명이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에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委員長 崔炳國 소위원회에 넣어서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보시렵니까?

○박세환 위원 그래요. 2소위로 좀 넘겨주시죠.

○委員長 崔炳國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님 뜻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박세환 위원 한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선병렬 위원 이 법명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본래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 보급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교육기능을 거기에 추가하는 제목으로 해서, 기본 법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법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뜻은 다 되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위원장님 이게 좀 급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2소위까지 넘기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조(정의)에 보니까 학교의 도서관은 도서관이나 도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국의 각급 학교에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2조의 정의에서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학교도서관은 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죠.

○김동철 위원 다 있다 이거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도서관까지는 아니라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인데 결국은 도서관을, 그런데 5조에서 보면 아까 김명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없다 이거죠? 다 있다 이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있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도서실이 있는데 이 법은 도서실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자는 그런 법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2조의 정의규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2조에. 2조2호의 학교도서관의 정의를 보십시오.

그러면 도서관의 정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도서실도 도서관으로 해 놓고 나서 도서실은 점차적으로 다 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5조의 규정은 좌우간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확보를 하자는, 말하자면 학교도서관계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법에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김동철 위원 법안을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안은 정말 정교하고 아주 치밀하게 규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지적보다도 이 법안이 도서관을 진흥하는 법안인데 결국 5조와 2조2호의 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물적 시설로서의 도서관을 진흥한다는 차원보다는 결국은 학교도서관지원센터나 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들을 확보해서 대체하는 쪽에다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교육부 산하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또 시도에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서교사, 실기교사 이런 사서직원만 각급 학교에 1명씩만 둔다 하더라도 이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 한 학교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1명씩만 두어서 3명씩을 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몇 명을 증원해야 됩니까? 각급 학교가 1만 개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지금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를 다 더해야 되어서 그렇게 되면 예산으로 볼 때 2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냥 강제조항으로 하기에는 매우 지방교육청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조항이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가 평생교육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평생교육법도 보면 평생교육위원회 설치부터 시작해서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또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김동철 위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두게 되어 있고 시·군·구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평생교육법도 이런 각종 기구·기관·조직들을 설치하는 쪽에다가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왜 이런 지적들을 계속 드리고 있느냐 하면 부총리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서 '참여정부' 그러면 가장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 증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몇십 명씩 증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참여정부 5년 동안 하루에 몇십 명씩 증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총리님 보니까 교육부에도 이렇게 필수불가결하게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요들이 계속 있는 거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지적하실 충분한 저기가 있는데 현재 이게 법 개정입니다. 이것 개정 전 상황으로는 이름이 기초지자체에는 지역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시도 레벨에는 평생교육정보센터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서 사실 명칭을 지금 통일하는 것이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을 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그전 명칭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은 평생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조직이 더 커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들이 지금 세 군데에 산재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는 데 있어서 기구가 더 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전 조직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조직 규모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규모가 변동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변동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맞습니까, 실무자?

○교육인적자원부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 곽창신 예.

○김동철 위원 교육부에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되어서 제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부총리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중에서 저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 증원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어떤 데 보면 몇만 명이 늘어났다, 다 해서. 그러니까 나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작은 정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국민의 정부도 또 참여정부도 역대 어떤 정부도 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은 정부는 없었고 물론 그중에 부처 이기주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은 계속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증원은 필수적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동철 위원 경찰공무원도 계속 치안수요가…… 국민들의 치안수요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경찰·소방 공무원도 또 늘려야 되지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또 이렇게 되니까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그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무원들을 증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기존에 통폐합되거나 줄어드는 업무들, 규제 부문 쪽의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만 축소되는 것보다는 지금 확대되는 쪽, 증원되는 쪽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론으로부터 정부 전체가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데 각 부처가 말이지요, 자기가 필요한 공무원들 증원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 내에서 또는 대국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 증원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 모르쇠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지 또는 대통합신당이 정권을 재창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정부도 공무원 증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교육부는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할 때 말씀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항상 교육부 출입하는 기자들이라든가 대언론 홍보 역할을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또 하나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일선학교를 돌아다녀 보니까 따로 학교별로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초등학교, 중등학교 학교별로—도서관 확충을 하는 예산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시도교육감의 재량의 폭이 넓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도서관을 진흥한다고 하면 적어도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형평, 균형 차원에서 뭔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국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학교 도서관 계속 증설하는 사업을 교육부가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에 일단 종결이 됐고요.

해 놓고 보니까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 안에 책을 넣는다든지 관리요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말하자면 진흥의 의지를 이 법에…… 진흥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를 계속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부총리,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내지 도서실의 규모나 도서 또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 같은 것들을 일률적으로 자료를 한번 전부 보시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학교별로 엄청나게 편차가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부터 시작해서 내부시설 기준이라든가 또는 도서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특정 교육감에 따라서 또는 특정 학교장의 교육의지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의지들에 따라서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알겠

습니다.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이 법안들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교육부 관료들한테,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하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점인데요,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표현을 바꾼 것이고 한글화한 것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요.

정부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세도 바꾸고 그러셔야 됩니다. 학교용지 확보하는 데 재원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 합헌적이고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담금에 관한 법리로 이미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법 일부 내용을 살짝 바꾸었어요. 2005년도에 납부의무자를 최초의 수분양자로 했다가 저항이 많고 위헌이라고 하니까 개발사업자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개발사업자로 납부의무자를 한다 한들 개발사업자 사장이 자기 개인 돈 주겠어요? 그것이 결국 분양원가에 전가돼서 최초의 수분양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텐데…… 정부가 그것을 정부안으로 내놓아서 통과시킨 우리 국회도 참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이 나서, 여러 가지 법리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것 폐지를 전제로 해서 다른 방도를, 합헌적이고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자꾸 모색해야지 여기에 의존하면 되겠느냐? 물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는 교육부가 돈을 안 줘서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초에 국가 5, 지자체 5에다가 학교용지부담금 2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10분의 5, 10분의 3, 10분의 2 이렇게 했는데 10분의 3도 안 하고 지자체가 돈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1조 8000억 원이나 딱 떼먹고 있어요. 지자체가. 공기관이. 그러면 지자체는 별개의 인격체이니까 국가가 소송을 하세요.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주민들의 혈세, 국민들의 혈세를 알뜰하게 생각해서 괜히 1시간씩 폭죽 터뜨리고 가수들 불러다 놓고 하는 이런 혈세 낭비, 도둑질 사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고 재원 마련도 어려우시면 이런 때일수록 원칙으로 가서 위헌이라고 이미 확인돼서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폐지하고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돈을 받아내세요. 소송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 지자체는 펑크가 나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 못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책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관장은 자기들이 하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이런 사태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부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본래 국가가 맡아야 될 공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너희 권한 놔라. 돈 다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딱 해야 국민 혈세가 말끔히 정돈되고 예산이 확실하게 되고 국가운영에 확실하게 기강이 서지요. 법은 내라고 그러는데 내지도 않고 버티고 있고, 그것이 1조 8000억 원이나 되고 교육부는 지적받고 있고……

그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 이런 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해 주세요. 지자체에서는 교육부총리께서 돈을 안 내서 학교를 못 짓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법안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평생교육국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국이 따로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이상민 위원 이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력을 좌우하는 인적요소가

어떻게든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능력을 국민 개개인이 갖춰야 되는데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력을 갖추게 하려면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전 과정을 계속 교육으로써 보강해서 훌륭한 인격자뿐만 아니라 능력가로 키워야 될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수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주도를 해서 국민 개개인의 라이프 스케줄에 맞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것들에 진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독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지역에서 들어 보니까 사서교사가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병호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보건교사 확충법안이 제출됐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아직 의결이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그것도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문병호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보건교사보다 사서교사가 오히려 더 부족하고 급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현재 사서교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교사, 영양사 등 사실 여러 분야의 교사들이 학교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여러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다만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는 사서교사 확충안이나 그런 지원안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여기에 그런 정신을 담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부총리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2항에서 제94항까지의 법률안 가운데 제92항은 김명주 위원이 지적한 자구를 수정하고, 제93항은 이상민 위원이 지적한 자구를 수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 의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9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9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몇 항을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지요?

○위원장대리 주성영 제95항입니다.

---

9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8. **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1. **島嶼·僻地敎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4.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37분)

○위원장대리 주성영 그다음, 의사일정 제97항 정부가 제출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정부가 제출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

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정부가 제출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정부가 제출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정부가 제출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3항 정부가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4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위원장님, 아까 제가 9건에 대해서 한국어 쉬운 용어로 하는 것은 일괄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대리 주성영 이것을 지난번에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아까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성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마쳤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각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행법들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수정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7항, 제99항에서 제102항까지 그리고 제10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8항, 제10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0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6.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문석호·안영근·염동연·유인태·강혜숙·김현미·정청래·서재관·신학용·양승조·전병헌·최철국·김교흥·박기춘·장경수·노웅래·이경숙·이은영·이근식·민병두·이상민·임종인·노회찬·박세환·나경원·유재건·장복심·송영길·우제창·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107.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8.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9.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엄호성·이주호·박성범·진수희·김영숙·허태열·박세환·한화갑·권영세·이인기·류근찬·이혜훈·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110.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

태·노영민·선병렬·제종길·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111.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2.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정병국·이혜훈·한선교·안홍준·정종복·최구식·박승환·이군현·서상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박형준·임인배·이계진·박찬숙·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계속)

1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 의원 발의)

1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42분)

○위원장대리 주성영 다음, 의사일정 제105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06항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 정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제110항 및 제111항 전여옥·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회대안, 의사일정 제112항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3항과 제114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회대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문병호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병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2년 11월 13일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는 등 형사법상의 특칙을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을 위한 이행입법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공청회를 생략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출국금지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출국금지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출국금지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대통령령에서 출국금지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여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하되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출국금지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현행 검사정원 증원규모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5명씩을 더 증원하여 총 정원을 1807명에서 1942명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증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감찰 담당 검사를 공개모집하고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감찰 담당 검사 중 법무부 감찰관의 경우에는 일반고위공무원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과 전여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빈발로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조치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시행일을 2년간 유예하고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방금 보고를 하신 문병호 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문병호 저는 입법에 대해서 이의를 달자는 것은 아니고, 감찰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법안소위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대검의 감찰관은 대검 검사로 하는 것이 적절한데 법무부 감찰관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사실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관 제도를 고위공무원으로 하려면 직제도 고쳐야 되고 법무부 내 여러 가지 규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무부가 마련한 안대로 해 주고 다음에 그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법무부에서 좀더 개방형으로 감찰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주실 것을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 보직 임명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진 잘 알겠습니다. 운영사항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문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5항, 제107항과 제10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9항, 제11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11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2항, 제11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14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5항에서 제124항까지 노회찬, 문병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

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권선택・김동철・김재윤・노영민・문병호・민병두・선병렬・우원식・유선호・유승희・임종인・제종길・최재천・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118.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구논회・장향숙・김선미・김교흥・강기정・신학용・김춘진・김동철・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119.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안상수・김재원・이강두・이계경・임인배・안홍준・김정훈・권경석・김학송・엄호성・배일도・황우여・이재웅 의원 발의)

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동철・류근찬・김낙순・변재일・이석현・윤호중・김선미・이승희・김영주 의원 발의)

1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김양수・이계경・정문헌・황우여・유승민・황진하・곽성문・안택수・신상진・김명주・이원복・정두언・이재창・김재원・정의화・김정권・이강두・배일도・이경재・정갑윤・박순자・김영숙・안홍준・제종길 의원 발의)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이경재・선병렬・김영주・김덕규・김재윤・김태년・이은영・이영호・정봉주・노영민 의원 발의)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김재홍・김우남・정동채・이강두・정종복・김명주・이계경・이성구・배일도・박세환・서병수・이인기・김태년・이경재・황우여・신상진・주성영・박상돈・박재완・백원우・정성호・박찬숙・서재관・이계진・임해규 의원 발의)(계속)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5.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김현미・심재덕・유승민・이재오・고조흥・안병엽・박재완・심재철・안상수・이시종・손봉숙・배일도・김원웅・이상경・신학용・박상돈・오제세・노현송・엄호성・서재관 의원 발의)(계속)

126.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윤호중・최성・박상돈・변재일・이해봉・이영호・이상민・김종률・이인기・서재관・황우여・안상수・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127.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석준・박계동・이성구・이상배・이성권・최철국・차명진・심재덕・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128.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선병렬・김종률・오영식・노영민・우윤근・한병도・제종길・한광원・임종석・조경태・김혁규・신학용・윤원호 의원 발의)(계속)

129.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0.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1.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2.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3.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이계경・박형준・권철현・김양수・김명주・정진석・남경필・정화원 의원 발의)

134.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박세환・안명옥・강혜숙・정동채・엄호성・이해봉・이낙연・노현송・심재철・이광철・황우여・박상돈・최순영・이재오・정화원・김춘진・임종인・이계경・강기정・홍미영・이상열 의원 발의)

135.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

136.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

표발의)(이성구·김기현·이해봉·신상진·이인기·박상돈·정성호·박재완·정의화·김학송·최구식·이명규 의원 발의)

137.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38.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이주호·안홍준·박승환·김석준·남경필·권철현·김명주·권영세·박형준·원희룡·이계경·정병국·정문헌·김병호 의원 발의)(계속)

139.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권영길·강기갑·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140.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재경·김재원·장윤석·박재완·김충환·전여옥·안상수·심재엽·허천·신상진·김용갑·박찬숙 의원 발의)(계속)

141.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영선·김태환·김홍일·박재완·손봉숙·이상열·이승희·정화원·주호영·최인기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142.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주호영·이인기·김재원·류근찬·박재완·김태환·공성진·이윤성·김석준·배일도·이명규·김희정 의원 발의)(계속)

143.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전여옥·박세환·유승민·이인기·박재완·엄호성·이해봉·김재원·신상진·허태열 의원 발의)

144.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염동연·김낙순·김동철·김태년·김태홍·박기춘·박상돈·안병엽·이시종·임종석·오제세·우제항 의원 발의)

145. **赦免法 전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전여옥 의원 외 10인 발의)

146.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47분)

○위원장대리 주성영 다음 의사일정 제115항에서 제124항까지 노회찬, 문병호, 이상민, 최구식, 이종걸, 맹형규, 신명, 정화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회 대안, 의사일정 제125항에서 제130항까지 이근식, 이종걸, 이계경, 김영주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회 대안, 의사일정 제131항 정부가 제출한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2항에서 제137항까지 정부와 이성권, 손봉숙, 문병호,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행형법 전부 또는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회 대안, 의사일정 제138항에서 제146항까지 이성권, 노회찬, 심재철, 이낙연, 이해봉, 안상수, 염동연, 전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회 대안,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이신 김명주 위원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代理 金命柱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명주 위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호 의원, 노회찬 의원, 이상민 의원, 정화원 의원, 최구식 의원, 이종걸 의원, 맹형규 의원, 신명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상 9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상 기간의 산입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금고 해당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해당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해당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해당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당범죄는 3년으로 각각 비례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재판의 진행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므로 재판시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재판절

차에 참여시켜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진술하거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나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으나 검사에게는 직접 질문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운영은 재판 전 단계인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 단계의 적정성에도 필요하므로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사과정에서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법무부령에 세부내용을 위임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넷째,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소자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범죄인인도법 등에서 형사소송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근식 의원, 이종걸 의원, 이계경 의원, 김영주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발의한 5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세 차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의 적용연령 및 촉법소년·우범소년의 연령을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의 저연령화 추세 등 저연령 소년범에 대처하고 비행으로부터 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각각 낮추었습니다.

둘째, 소년 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을 신설하는 등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넷째,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검사의 처분결정 전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법무부장관의 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소년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다만 소년법 개정안에 맞추어 인용 규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성권 의원, 손봉숙 의원, 문병호 의원 및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행형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신내용의 검열원칙을 무검열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창작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결수용자는 징벌 집행 중이라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 수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살·폭행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정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정시설별로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한편 주류·담배 등을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하고 여성·노인 수용자 등의 처우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며 분류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권 의원, 노회찬 의원, 심재철 의원, 이낙연 의원, 이해봉 의원, 안상수 의원, 염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법무부에 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내용의 공개시기,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렬 위원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예, 우리 문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병호 위원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연장에 관해서 우리 소위에서 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법안을 발의할 때 취지는 국가형벌권을 강화하고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서 범죄예방을 하고 우리 사회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소급효를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것, 완료가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을 해서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냈는데 소위에서는 공소시효를 소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이 법 시행에 있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잘 지휘하셔서 국가형벌권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진 예, 잘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주성영 예.

○법무부장관 정성진 한 가지만 참고 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성영 예,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진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면권이 대통령—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의 적정한 사면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성영 간사, 최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사면의 어떤 합리성 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것은 법무부장관의 특별 상신권 행사에 관한 자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심사'라는 용

어가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돼서 '심의' 정도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장관님, 행형법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행형법에 보면 '권리구제'라는 장이 있습니다. 116조에 소장의 면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소장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도소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진 교도소장은 자유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이지요.

○박세환 위원 수용자의 관리 이런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또 수용자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책무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진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수용자는 처우에 관해서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진 지금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경향이 수용자의 권리를 많이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용자도 형의 집행적 측면보다 처우상의 합리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다음에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처우에 관해서 불복이 있으면 청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법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기본권적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로 수용자의 장이나 그 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에게도 당연히 청원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박세환 위원 장관님, 법이라는 것이 법 조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정말 필요하고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불리한 입장에 있는 수용자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이런 장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법이 없다고 해서 수용자가 소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할 수 없습니까? 청원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거고 교도소장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자기가 다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수용자들이 면담요청을 하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까지 법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권리구제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진 법에서 좀더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이거 뭔가…… 이게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해야 할 법무부에서 만든 법안이 이런 법안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진 그게 그냥 모양상의 규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규정이 되도록 운영상 더 유의하고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심의한 내용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여기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해야 하고,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그냥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

그리고 이런 것을 무슨 권리구제라고 해서……

이 행형법 개정안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전체 회의에 계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이 법은 통과시키지 말자 이것입니까?

○박세환 위원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委員 사면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좀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법무부장관께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과연 기속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다. 그런데 이 사면법이 건국 초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 60년이 됐는데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을 남발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무효화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그래 가지고 개정안이 8개나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개정안 8개의 내용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게 법무부장관 산하에 사면심사위

원회를 두고 심사를 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하기 전에 그렇게 한다면 결국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복권을 상신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지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의 권한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 그 심사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법무부장관께 물어볼 게 아니라 1소위 위원께도 같이 좀 묻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진 장관의 사면상신권 행사에 관한 자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적정한 합리적인 그런 사면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상신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수정 변경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진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겠지요.

○趙舜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뭘 하러 개정을 하고 이럽니까? 이게 대통령의 무제한의 사면권,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폐단과 부작용이 많았던……

○법무부장관 정성진 그러나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영이 되겠지요.

○趙舜衡 委員 좀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다면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면법 개정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1소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8개씩이나 있었는데……

전문위원, 내가 물어보겠는데, 심사위원회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개정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법무부장관이 벌써부터 단지 자문을 거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니까 이거 개정하나 마나입니다, 이렇다면 말이지.

벌써 장관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덟 개의 개정안 중에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개정안이 있었을 텐데……

○委員長 崔炳國 문병호 위원님.

○문병호 위원 제가 1소위 위원으로서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면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률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법에서 사면법을 만들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되 그것이 그 기구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면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권을 갖는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주어진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면심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규정을 하자, 이렇게 했고요.

다만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지만 법무부 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내용, 규모, 성격, 이런 것을 한 번은 걸러주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법무부공무원도 있지만 외부 민간위원으로 네 명이 들어가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그 내용을 심사하고, 자문을 하고, 걸러준다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상당히 견제가 되고 자의적인 사면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견제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우리 소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 및 공개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자의로 심사과정이라든가 내용·공개시기·공개범위 이런 것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놔 가지고 사실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전혀, 비공개되고 말이지요. 말하자면 여론화가 되지 않고 그럴 우려가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법무부장관 정성진 일단 운영상 위에서, 심사위원회의에 비해서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물론 헌법에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느 한계까지 그것을 제약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사실 헌법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나 하여간 어떻든, 그래도 최소한도 적어도 견제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그런 저게 되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 이것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실효성 있는 견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1소위원회에서 이미 상정되고 지금 이 단계에서 수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것은 앞으로 또 개정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5항에서 제12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24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5항에서 제12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0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2항에서 제13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7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세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아까 이의는 말씀하셨잖아, 다 듣고 있었어. 표결해요, 표결.

○委員長 崔炳國 조금 전에도, 우리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의견 개진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견이든지 조금 전에 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소수의견으로 하고 그렇게 의결하도록 합시다.

○박세환 위원 저는 하여튼 반대입니다.

○주성영 위원 반대의견으로 하세요.

○委員長 崔炳國 반대의견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주 졸렬한 입법이다……

○委員長 崔炳國 예?

○박세환 위원 졸렬한 입법이라고요.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138항에서 제14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46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은 바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10.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계속)
11.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미경・천영세・박성범・류근찬・한광원・장복심・정종복・김덕규・노현송・이계진・정청래・노웅래・이광재・김희선・윤원호・지병문・조배숙・강창일・오영식・권영길・우상호・박찬숙・강혜숙・김재윤・서재관・이광철・윤호중・강기정・김태홍・신기남・문병호・조정식・이낙연・최재천・이계안・주승용・유재건・변재일・우윤근・김낙순・염동연・조일현・이근식・강봉균・최용규・이종걸・장경수・양형일・우제창・우원식・진수희・김영주・노회찬・최순영・단병호・우제항・이강래・제종길・최규식・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5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6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6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62.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유기준・유승민・고진화・배일도・이계경・엄호성・정문헌・김정훈・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63.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김명자・김영주・김춘진・민병두・우윤근・이계안・이미경・이영호・정의용・최재천 의원 발의)(계속)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종걸・이광철・송영길・김태년・변재일・이미경・박상돈・고희선・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6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명주・김석준・김양수・김재경・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 의원 발의)(계속)
66.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6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68.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7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71.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영세・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72. **韓國投資公社의解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주호・진수희・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73. **侵犯地域內金融機關預金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군현・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74. **長期信用銀行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권철현・김석준・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인기・이주호・진수희 의원 발의)(계속)
75.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이성권・곽성문・차명진・이주호・한선교・최구식・엄호성・이재오・박형준 의원 발의)(계속)
7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강창일・양형일・제종길・홍미영・안홍준・윤원호・이목희・우원식・장향숙・배일도 의원 발의)(계속)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8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8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8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8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유재건·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89.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1.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2.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우남·안상수·안민석·김현미·김영춘·정청래·백원우·문석호·박상돈·이미경·강혜숙·김원웅·김낙순 의원 발의)(계속)

93.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광철·강창일·민병두·정봉주·안민석·김태년·최순영·이인영·김희선·이인제·서갑원·김낙성·곽성문·김송자·문희상·유재건·박상돈·최규성·김교흥·김영숙·이경숙·문학진·최재성·이미경·정병국·제종길·이계경·유필우·김용갑·이계진·엄호성·김학송·이재오·전병헌·이낙연·김원기·김근태·손봉숙·강기갑·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이영순 의원 발의)(계속)

94.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계속)

9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계속)

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8. 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0.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1. 島嶼·僻地敎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4.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6. 出入國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문석호·안영근·염동연·유인태·강혜숙·김현미·정청래·서재관·신학용·양승조·전병헌·최철국·김교흥·박기춘·장경수·노웅래·이경숙·이은영·이근식·민병두·이상민·임종인·노회찬·박세환·나경원·유재건

・장복심・송영길・우제창・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107.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8.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9.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엄호성・이주호・박성범・진수희・김영숙・허태열・박세환・한화갑・권영세・이인기・류근찬・이혜훈・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110.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제종길・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111.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12.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정병국・이혜훈・한선교・안홍준・정종복・최구식・박승환・이군현・서상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박형준・임인배・이계진・박찬숙・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계속)

1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 의원 발의)(계속)

1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15.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계속)

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권선택・김동철・김재윤・노영민・문병호・민병두・선병렬・우원식・유선호・유승희・임종인・제종길・최재천・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118.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구논회・장향숙・김선미・김교흥・강기정・신학용・김춘진・김동철・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119.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안상수・김재원・이강두・이계경・임인배・안홍준・김정훈・권경석・김학송・엄호성・배일도・황우여・이재웅 의원 발의)(계속)

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동철・류근찬・김낙순・변재일・이석현・윤호중・김선미・이승희・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1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김양수・이계경・정문헌・황우여・유승민・황진하・곽성문・안택수・신상진・김명주・이원복・정두언・이재창・김재원・정의화・김정권・이강두・배일도・이경재・정갑윤・박순자・김영숙・안홍준・제종길 의원 발의)(계속)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이경재・선병렬・김영주・김덕규・김재윤・김태년・이은영・이영호・정봉주・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김재홍・김우남・정동채・이강두・정종복・김명주・이계경・이성구・배일도・박세환・서병수・이인기・김태년・이경재・황우여・신상진・주성영・박상돈・박재완・백원우・정성호・박찬숙・서재관・이계진・임해규 의원 발의)(계속)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25.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김현미・심재덕・유승민・이재오・고조흥・안병엽・박재완・심재철・안상수・이시종・손봉숙・배일도・김원웅・이상경・신학용・박상돈・오제세・노현송・엄호성・서재관 의원 발의)(계속)

126.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윤호중・최성・박상돈・변재일・이해봉・이영호・이상민・김종률・이인기・서재관・황우여・안상수・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127.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석준・박계동・이성구・이상배・이성권・최철국・차명진・심재덕・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128.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선병렬・김종률・오영식・노영민・우윤근・한병도・제종길・한광원・임종석・조경태・김혁규・신학용・윤원호 의원 발의)(계속)

129.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0. **少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31. **少年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2.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3.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이계경・박형준・권철현・김양수・김명주・정진석・남경필・정화원 의원 발의)(계속)

134.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박세환・안명옥・강혜숙・정동채・엄호성・이해봉・이낙연・노현송・심재철・이광철・황우여・박상돈・최순영・이재오・정화원・김춘진・임종인・이계경・강기정・홍미영・이상열 의원 발의)(계속)

135.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계속)

136. **行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기현・이해봉・신상진・이인기・박상돈・정성호・박재완・정의화・김학송・최구식・이명규 의원 발의)(계속)

137. **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38.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이주호・안홍준・박승환・김석준・남경필・권철현・김명주・권영세・박형준・원희룡・이계경・정병국・정문헌・김병호 의원 발의)(계속)

139.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권영길・강기갑・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140.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재경・김재원・장윤석・박재완・김충환・전여옥・안상수・심재엽・허천・신상진・김용갑・박찬숙 의원 발의)(계속)

141.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영선・김태환・김홍일・박재완・손봉숙・이상열・이승희・정화원・주호영・최인기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142.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주호영・이인기・김재원・류근찬・박재완・김태환・공성진・이윤성・김석준・배일도・이명규・김희정 의원 발의)(계속)

143.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전여옥・박세환・유승민・이인기・박재완・엄호성・이해봉・김재원・신상진・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144.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염동연・김낙순・김동철・김태년・김태홍・박기춘・박상돈・안병엽・이시종・임종석・오제세・우제항 의원 발의)(계속)

145. **赦免法 전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발의)(전여옥 의원 외 10인 발의)(계속)

146. **赦免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8시19분)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잠시 심사를 중단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결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과 제5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57항, 제6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제58항, 제59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60항은 제6조제1항제2호 중 “권유하거나 요청한 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 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에서 제71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에서 제7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에서 제8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제84항, 제86항, 제89항 및 제9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제87항, 제88항 및 제9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에서 9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제92항은 김명주 위원이 지적한 자구를 수정하여, 제93항은 이상민 위원이 지적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제99항에서 제102항까지 그리고 제10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제10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제107항과 제10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제11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11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제1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14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에서 제12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24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에서 제12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0항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2항에서 제13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7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세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뭐가 있어?

○委員長 崔炳國 행형법 그 부분은 아까 박세환 위원님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박세환 위원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시켜 달라는 소수의견을……

○委員長 崔炳國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소수의견을 붙이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지금 현재 행형법 갖고도 별 문제가 없어.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행형법이 몇 조였습니까?

○선병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철 위원 위원회 대안으로 받아들여야지.

○委員長 崔炳國 137항에 대해서는 박세환 위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8항에서 제14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46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좀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심사"를 "심의"로 고치는 것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성격에 맞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무시합니까?

○이상민 위원 아니, 그냥 "심사"로 해요. 됐어요.

○委員長 崔炳國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요?

○선병렬 위원 아니, 묻는 거예요. 묻지도 못해요?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146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새로운 의사일정 가기 전에 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될 안건이 207건이나 되고 그래서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협조를 해야 됩니다만 불가피하게 제가 법안심사1소위원이 아니고 또 이제 17대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아마 내년 2월 국회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후반기에 왔습니다만 17대 국회 후반기는 물론이고 전반기 그리고 16대 국회, 그 이전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소위 '유전무전 무전유죄'라고 하는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된 상태에서 사법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 고액수임료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 상임위원회에서라든가 또는 국정감사 등에서 전관예우나 고액수임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견을 이유로 해서 처리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무조건적인 개업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께도 간곡히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주성영, 김명주 또 우리 박세환 위원님, 이주영 선배님께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회찬 위원님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법 적용을 최소화해서 최종 근무지가 아니라 최종 근무 법원 또는 검찰로 제한하고 그리고 개업 제한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 제한으로 바꾸고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전관예우에 관한 금지를 사실상 달성할 수 있으면서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극적인 반대 입장까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소위에서, 이제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소위에서 이런 것들을, 아마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바라고 있을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법안심사1소위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고 이 법안이 제가 제안한 대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동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신속히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147. 非訟事件節次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발의)(김성조 의원 외 11인 발의)

1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정부 제출)

1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

1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김현미·노웅래·박찬석·이상경·이상민·이인영·강창일·정청래·제종길·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1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장향숙·정화원·박재완·김태홍·한광원·안영근·서갑원·심재덕·우제창·이경숙·김재홍·이종걸·노현송·강창일·이상민·김동철·신상진·김영춘·정청래·안병엽 의원 발의)

1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박상돈·정동채·이계경·김학송·정화원·김종률·이성권·서병수·황우여·엄호성·이경재·신상진·최경환·박재완 의원 발의)

153. 民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안상수·김영덕·권경석·정갑윤·박형준·박상돈·이강두·김양수·김정부·최구식·신상진·이영호 의원 발의)

15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효석·박명광·김정훈·엄호성·주성영·김석준·이성권·정화원·안명옥·김태환·이상배·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1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6.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엄호성·박세환·박재완·주호영·임태희·이명규·배일도·김정훈·정두언·김명주·장윤석·강길부·김재경·황우여·이계경·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15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유재건·홍미영·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계속)

(18시29분)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147항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8항과 제149항 정부가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과 위원회 대안, 의사일정 제150항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1항에서 154항까지 문병호, 이성구, 안홍준, 이계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원회 대안, 의사일정 156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7항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이신 박세환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박세환 법안심사제1소위원인 박세환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들 두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안 제7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주의 원칙의 후퇴라고 보아 이 단서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적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행정조사 불응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반의 우려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상한을 300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상한 3000만 원의 의미를 형해화할 수 있고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문과 단서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은 필요에 따라 행정청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청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용정보의 제공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과태료 체납 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체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 정무직으로 하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하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병호 의원, 이성구 의원, 안홍준 의원 및 이계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4건의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하여 양성평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여성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의 상향으로 인하여 오히려 혼인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여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였고,

마지막으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여 재산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 7427호 개정 민법이 2005년 3월 31일자로 공포되어 그 중 일부 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일부 신설하였는바,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추가하고,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맞추어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 입양 허가 등의 사건관장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민법의 개정으로 부부 일방의 다른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새로 규정됨에 따라 가사소송사건 중 하나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취지에 맞추어 헌법연구관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였고,

둘째, 헌법재판소의 업무 중 심판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 효율적인 재판업무의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헌법연구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건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도록 현직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3년의 범위 내에서 헌법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헌법재판소의 조직개편 등을 감안해서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보고한 데 대해 가지고

보고하신 분이 질의하면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박세환 위원 이것은 대충 읽었고요.

못 하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박세환 위원님, 답변하세요.

○委員長 崔炳國 행정부처에 질의하세요. 법의 라든지……

○박세환 위원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정진호 예.

○박세환 위원 법원행정처장을 지금 현재는 대법관 중에서 임명을 안 했는데 대법관 중에서 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할 만한 어떤 사정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법무부차관 정진호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사정 변경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게 2005년도 12월달에 법률이 개정되었더라고요.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변동된 상황이 없는데도 이렇게 법률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에 그 법률을 개정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 미스였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정진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렇잖아요. 2년 동안에 전혀 사정 변동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혹시 시간적으로도 2년이면 별로 오랜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닌데,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왜 바꾸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청문회 시절부터 여러 가지 생각하셔 가지고 처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사위에다가 의견을 보내 가지고 법사위안으로 해 가지고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고……

○박세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05년도 12월달에 법원조직법 해당 조항을 바꾼 당시에는 깊은 정책적인 고려가 없었다, 이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쉽게 생각해서 법을 고쳤다가 2년 지나니까 또 법 고치고 말입니다.

○이상민 위원 법은 국회가 고친 것이에요.

○박세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하여간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환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명백히 하고 갑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너무 잘못한 판단 미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민법 836조의2 이혼의 절차, 이게 협의이혼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게 이혼 당시에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같은데요. 저도 소위 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위에서 당시 논의된 사항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법안 가지고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사람들이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못합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세요?

837조4항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협의이혼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金命柱 委員 '직권으로'가 새로 넣은 것이지요?

○전문위원 강경필 예.

○이주영 위원 이게 그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것을 담은 것이에요, 별문제 없지요?

○전문위원 강경필 예.

○이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협의이혼 당시에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안 되었어도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협

의이혼 판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 받아 가지고 협의이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예.

○이주영 위원 예, 됐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委員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법관을 한 사람 늘리는 것입니까, 아까 언뜻 그렇게 들었는데?

○이주영 위원 늘리는 것 맞아요.

○趙舜衡 委員 13명인데 14명으로, 그러면 늘리는 한 사람의 대법관은 말하자면 법원행정처장 전임으로 하는 그런 의도인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동안에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해 가지고 대법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선진국의 대법원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법관을 증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취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종래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예, 사건으로 봐 가지고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려면 적어도 대법관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은 돼야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런데 종전에는 그냥 대법관 13인으로 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장도 겸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을 늘렸단 말이에요. 늘리려면 그까짓 것 한 10명쯤 늘리지 1명만 늘립니까, 이왕 늘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1명은 결국은 법원행정처장 전임 대법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그러니까 종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의 법률 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불과 2년 전에 그래도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하느냐, 이런 중요한 입법 문제에 있어서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법사위의 권위와 위신도 그렇고 국회의 위신도 손상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정부 입법입니까,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의원 입법입니다.

○이주영 위원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趙舜衡 委員 의원 입법이에요? 그런데 1소위 위원들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왕 늘리려면 대법관 한 대여섯 명 늘리지,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저희 1소위에서 고등법원 상고부는 국민들의 대법원 재판을 받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법원 시스템을 조 선배님 말씀마따나 대폭 확충을 해라, 어느 정도가 적정 인원인지를 연구해서 법사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사실은, 법원의 입장은 대법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아주 상반된 입장입니다.

○趙舜衡 委員 그런데 어떻게 1명을 늘리게 되었습니까?

○소위원장 이상민 하도 사정 사정을 해서……

○趙舜衡 委員 누가요?

○문병호 위원 지난번에 대법관 1명을 줄이고 행정처장을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처장을 없애고 원상복원시키는 것이지요.

○趙舜衡 委員 지난번에는 또 줄였습니까?

○문병호 위원 예, 1명 줄였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늘려서 원상복구하는데……

○선병렬 위원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로 정착시켜 보려고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다 해서 다시 되돌린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에서 배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7항, 제14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49항의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1항에서 제15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55항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6항과 제15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58. **刑事訴訟法 一部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유시민・서갑원・원혜영・노현송・이원영・홍창선・김재홍・이철우・김영춘・조배숙・서재관・우제창・신중식 의원 발의)(계속)

159.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서병수・김충환・김기춘・주호영・이상득・유기준・김광원・박승환・김석준・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1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상돈・안상수・안명옥・이계경・심재덕・이상열・이인제・장복심・양승조 의원 발의)

161.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유기준・김재원・이해봉・이인기・주호영・엄호성・진수희・이계경・정종복・박재완 의원 발의)(계속)

162.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이해봉・이성권・황우여・이인기・안상수・이계경・김용갑・김영숙・김정권・김석준・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163.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서병수・심재철・이해봉・이계경・김재원・박재완・박세환・박찬숙・황우여・배일도・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164.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충환・김희정・엄호성・박순자・진수희・김기현・박세환・이재오・정병국・이명규 의원 발의)(계속)

165.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박세환・김재원・고흥길・안명옥・배일도・고조흥・유승민・안상수・김부겸・유기준・이혜훈・이해봉・최성・전재희・김성곤・황우여・조경태・이근식・홍창선・정병국・정화원・신기남・박재완・이경재・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166.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명규・엄호성・권오을・윤건영・유승민・안상수・이계경・박찬숙・김재원・이혜훈・박재완・박승환・전여옥・박명광 의원 발의)(계속)

167.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윤건영・문희・김희정・박재완・심재엽・곽성문・이규택・박찬숙・이병석・전여옥・진수희・김영숙・장윤석・이계경 의원 발의)(계속)

168. **出入國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재오・유시민・노현송・김영주・이영호・이원영・유승희・김태년・신중식・박찬석・김한길・한광원 의원 발의)(계속)

169.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엄호성・최경환・안경률・김정훈・안상수・이주호・김충환・주호영・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17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심재덕・박찬숙・이강두・이계경・김영덕・김정훈・김석준・이재웅・임인배・박형준 의원 발의)(계속)

171.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김석준·이계경·박형준·권철현·김양수·김희정·김명주·남경필·정화원 의원 발의)(계속)

172. **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이재웅·안명옥·김재경·정진섭·김영숙·김정훈·김성조·박재완·유기준·윤두환·서병수·한선교·진영·이종구 의원 발의)(계속)

173.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재원·정병국·허태열·진수희·이방호·안경률·박재완·심재엽·김기춘·유정복 의원 발의)(계속)

174.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명광·강창일·노현송·황우여·박기춘·박재완·박상돈·안상수·김종률·김동철·강기정·이근식·심재덕·정성호·우제창·이계안·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175.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원혜영·최인기·노현송·노웅래·정성호·김원웅·장복심·장향숙·박계동·현애자·최성·노영민·주승용·강창일·오영식·천영세·유기홍·이철우·류근찬·김태홍·이군현·이원영·임종석·고진화·강기정·최순영·이영순·양형일·단병호·노회찬·심상정·권영길·강기갑·유승희·백원우·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176.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기우·박기춘·이해봉·최재성·김형주·유기준·강창일·박세환·박재완·오제세·김혁규·이은영·이원영·노현송·백원우·배일도·염동연 의원 발의)(계속)

177.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발의)(최재천 의원 외 150인 발의)(계속)

17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김현미·김희정·박세환·박순자·손봉숙·이경숙·유승희·이계경·이계안·이재오·조배숙·진수희·최순영·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정형근·박상돈·박재완·유기준·노현송·김재원·안상수·윤건영·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180.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박계동·박찬숙·신국환·신중식·서재관·서혜석·최인기·안병엽·이시종·이정일·이윤성·이혜훈·엄호성·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181.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신상진·이영호·정동채·김낙순·홍창선·이광철·선병렬·정봉주·최재천·이원영·정성호·장경수·김교흥·정의용·윤원호·지병문·이화영·김재홍·우제창·제종길 의원 발의)

182.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이은영·오제세·이계경·송영길·조일현·우원식·장영달·노영민·민병두·문학진 의원 발의)

183.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원희룡·강창일·김명주·정병국·이명규·이성권·이영순·박계동·현애자·배일도·박형준·정문헌 의원 발의)

18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염동연·신기남·정봉주·오제세·정성호·조성래·김태홍·유승희·김영춘·정청래·김희선·김태년·전병헌·이계진·배일도·정병국·이광철·황우여·장복심·신국환·제종길·이상경·노현송·류근찬·이원영·홍미영·이근식·유필우·안병엽·안상수·심재덕·강기갑·고진화·최경환·이진구 의원 발의)

1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공성진·곽성문·김무성·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태환·김희정·박계동·박세환·박재완·엄호성·유기준·이시종·이재오·이주호·이해봉·김영숙·최인기·황진하·심재철 의원 발의)

186.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고진화・구논회・김부겸・김성곤・김재경・김희선・노현송・박상돈・송영길・신국환・신중식・심재철・안민석・안병엽・안상수・양형일・오제세・우제창・유선호・이근식・이미경・이시종・이재오・이종걸・전병헌・정문헌・정봉주・정성호・정청래・주호영・최인기・최재성 의원 발의)

187.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박형준・정화원・안홍준・김양수・이계경・남경필・배일도・이재웅・김무성・김석준 의원 발의)

18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유기준・임해규・심재철・엄호성・박상돈・선병렬・최재천・우윤근・변재일・이종걸・박기춘・노현송・이원영・박재완・김재윤 의원 발의)

1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한광원・박형준・권오을・김명주・유기준・이인기・박상돈・김성곤・김정훈・김석준・이성권・김광원・김충환・신상진・나경원・엄호성 의원 발의)

1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김덕규・이상열・박상돈・김낙순・노현송・김효석・박기춘・이종걸・김성곤・김영춘・홍미영・김혁규・양형일 의원 발의)

191.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곽성문・박재완・이해봉・주호영・엄호성・배일도・김영선・박찬숙・장복심・이계경 의원 발의)

192.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안택수・김재원・황진하・이인기・이윤성・조성래・김애실・이상경・정형근・김영선・박상돈・이해봉・박재완 의원 발의)

193.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공성진・김석준・김영숙・박재완・신상진・안택수・이경재・이성구・이윤성・이인기・이재웅・이해봉・정의화・한선교 의원 발의)

194.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배일도・유정복・엄호성・정의화・이종구・김석준・안홍준・이계경・심재엽・고흥길 의원 발의)

195.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배기선・우제항・김부겸・장향숙・정성호・강기정・정장선・유재건・강창일 의원 발의)

(18시49분)

○委員長 崔炳國 의사일정 제158항에서 제195항까지 38건의 폐기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님!

○소위원장대리 선병렬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 선병렬 위원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 장윤석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2007년 6월 1일 공표된 사법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그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계경 의원, 박세환 의원, 서병수 의원, 박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위 법률을 개정하면서 각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해석으로 개정취지를 반영할 수 있어서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범죄에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른 범죄와의 균형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 12월 19일 개정된 내용을 재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무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현재 법무관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동 법안의 취지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엄호성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개정 취지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해결하기로 하여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은 개정 취지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직제 개정으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최재천 의원 및 김애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김효석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를 가중처벌하려는 동일한 취지의 것으로 보험사기만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로서는 거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김원웅 의원과 임인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무국적 또는 외국국적 상태의 독립유공자는 1948년 국적법 시행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고, 사망자의 국적 취득은 불가능한 점,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절차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 간의 상호 업무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 그 입법취지를 반영하기로 하였고, 박승환 의원 및 최규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위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성구 의원, 안상수 의원, 이명규 의원, 안명옥 의원과 김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호적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있으므로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8항에서 19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6. 인신보호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고경화·고진화·곽성문·김영춘·김원웅·김정훈·김태년·김태환·김희정·박세환·박순자·박재완·박진·박창달·서재관·손봉숙·신학용·안상수·안택수·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제창·유기준·유정복·윤건영·이계경·이계진·이규택·이근식·이상경·이상득·이상열·이윤성·이해봉·이혜훈·임태희·장윤석·전여옥·정두언·정병국·정종복·정화원·진영·최경환·최구식·홍준표·황

우여 의원 발의)(계속)

197. 건축기본법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상돈·김희선·김명자·김영주·최철국·김낙순·박찬석·장복심·노웅래·조성래·주승용·장향숙·김혁규·문학진 의원 발의)

1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혜석 의원 대표발의)(서혜석·김우남·김현미·최규성·우제창·선병렬·김동철·이종걸·서상기·홍창선·강성종·천정배·유승희·류근찬·김영주·제종길 의원 발의)

19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0.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56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196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안, 의사일정 제197항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98항 서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9항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0항 정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이주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주영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이주영 위원입니다.

먼저 인신보호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하면서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형사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와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둘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청구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제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형식을 결정으로 하는 등 구제청구제도를 보완하고, 불명확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하며, 법안의 체계와 자구 등을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기본법안,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산업디자인진흥법과 충돌 여부가 문제되어 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간에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여 첫째,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건축디자인 등 건축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을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건축디자인 관련 재정 지원과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건축 관련 평가 및 인증제도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의 위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서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허가 사유를 '기술적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향되는 경우도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가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고 기술 향상의 경우까지 허가받도록 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응하도록 의무 지우고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자료 제출을 의무 지우는 내용은

삭제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하도급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과 관련하여 승인의 주체로 규정된 '당해 사업의 계약공무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승인 주체를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각각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인신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참고의견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인신보호법안, 이것은 의원법안인데, 나경원 의원 등 49명이 제출한 법안인데 법원하고 관계가 있는 법안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저 개인적으로 참고의견을 한마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뭐,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법안에 관한 어떤 의견을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하면 좀 이상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인신보호영장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실무를 보면 인신보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구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은닉시켜 가지고 이게 정당한 인신보호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피수용자를 이동시키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이 입법에 의한 인신보호업무를 방해하는 자하고 거기다 합쳐서 보고서를 허위작성하는 자를 처벌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랜 실무상 나타난 것이 법안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경원 의원님께서 제출하시는 것은 벌칙이 너무 많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줄인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이 피구속자를 이동시키거나 은닉시키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뭐, 법률 전문가로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좋은 건데요, 이것은 아마 새로 제정하는 법률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제정한 법률을 아직도 시행도 하지 아니하면서 벌칙규정을 둔다든가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래 해 가지고 일단 2소위원회에서 처음은 좀 추상적인 어떤 규정으로, 그리고 점점 가면서 좀 구체적인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6항에서 제20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196항에 이의가 있습니다. 인신보호법안에 저는 반대입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면 의견을 달고 하시지요.

○委員長 崔炳國 반대의견,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委員長 崔炳國 예, 그러면 김동철 위원님은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달아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05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201항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3. 인권교육진흥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상돈·김명자·지병문·김태년·김영춘·선병렬·문병호·김현미·이계안·이상경·김동철 의원 발의)

204.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0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정부 제출)

(19시06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202항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3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교육진흥법안, 의사일정 제204항 정부가 제출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05항 정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202항, 제204항 및 제20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긴급하게 주재할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잠시 비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정진호 법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속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준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목적으로 이사 등 회사의 업무집행기관 관련 규정을 개선·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배당, 기타 자금 운용의 방식을 개선하여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경영에 도입하여 기업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의 형태, 주식의 종류 등을 다양화하고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법 회사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기업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도입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를 신설하며,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봉의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기업 경영의 IT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및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경영에 발달된 IT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권제한주식 등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채의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도입하는 등 사채제도를 개선하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회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되, 세부적 규정들을 삭제하여 회계규정을 정비하며, 자금 운용과 재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현물 배당을 허용하는 등 배당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액면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며, 벤처기업 등 인적 자산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적합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운 기업 형태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발효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척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뇌물죄·경매방해죄·횡령죄 등 이 법률이 적용되는 부패범죄를 상세히 열거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횡령·배임 등의 결과로 취득한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환부 등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내에 있는 부패재산을 해외로 반환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외국의 공조 요청에 따라 부패재산을 반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넷째, 법무부장관이 해외로 유출된 부패재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0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202항에서 제20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취지 및 주요 특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상법 요약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사편의 대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사법의 개정 흐름에 맞추어 회사 경영의 IT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고 우리 경제 실정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상사법제의 선진화 구축작업의 일환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자금 운용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특징은 크게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 경영의 IT화,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등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임중호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원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05항 법률안……

○전문위원 임중호 다음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崔炳國 끝이 난 게 아닙니까? 그럼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임중호 이어서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권교육진흥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대상이 인권교육진흥법안 이외에 정부가 제출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도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는데—다음 페이지입니다—두 법률안은 법령 및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상이점은 있으나 그 취지에 있어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에 관해서도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앞서 말씀드린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교육진흥법안과 그 취지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두 법률안을 함께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05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행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협약은 비준되면 그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협약의 의무사항은 이미 국내법상 실시되고 있으므로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민간 및 공공부문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부패재산의 환수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등 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2월 10일 이 협약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현재 협약의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이 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명시하고 있는데, 협약의 국회 동의 절차와 동시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거나 국회 동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에 대한 국회 동의가 끝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소위에서 이 부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타 그 법안의 정리 및 체계 등 구체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차관님께……

법무부차관님, 이게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인데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

○법무부차관 정진호 소관부처가 인권위원회입니다.

○박세환 위원 인권위원회고, 행정자치부는 어떤 거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까? 소관부처가 어디예요?

○행정자치부제1차관 최양식 인권위원회입니다.

○박세환 위원 인권위원회인데 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나오셨지?

○행정자치부제1차관 최양식 소관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제안설명차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안 준비는 인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인권위원회 소관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나요?

○문병호 위원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소관으로……

○행정자치부제1차관 최양식 부서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 식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나 인권교육진흥법안, 이게 전부 다 인권위원회 소관법률인가요?

○행정자치부제1차관 최양식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2항에서 20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선병렬 위원 특검법 전체회의에서 논의 안 해요?

○委員長 崔炳國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내일 전체회의가 있어요?

○委員長 崔炳國 내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선병렬 위원 잠깐 정회해 놓고 다른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1소위 위원님들 논의하시고……

○委員長 崔炳國 내일 하면 돼요.

○박세환 위원 산회하시지요.

○이상민 위원 1소위가 저희들이 아까 12시부터 3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시에 다시 2차 특검에 관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회의

가 계속 심의가 이루어져서 소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마 연락받으셨겠지만, 전체회의가 끝나면 소위를 열어서, 일단 정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오늘 결론을 내든지, 내일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이런 것을 전체회의 끝나고 소위에서 논의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가 끝나시면 1소위 위원님들은 가지 마시고 이 옆의 소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선병렬 위원 오전에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께서는 시한을 정하라고 할 정도로 긴급하게 처리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전체회의를 정회를 하시고 제1소위원회를 열고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은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오늘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마무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위원님 말씀도 참 옳습니다만요, 조금 전까지 우리 위원회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두 간사님이 합의만 하면 내일 오전에도 할 수 있고, 또 모레도 오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우리 위원회 하도록 요구합시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산회를 하고 내일 하든지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동철	김명주	김종률	노회찬
문병호	박세환	선병렬	우윤근
이상민	이재오	이주영	조순형
주성영	최병국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권오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	임중호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	곽창신
학교정책실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	민병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법무부	
장관	정성진
차관	정진호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환경부	
장관	이규용
자연보전국장	이재홍
노동부장관	이상수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차관	이춘희
국방부장관	김장수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외교통상부제1차관	조중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임영록
금융정책국보험제도과장	박영춘
정보통신부차관	김동수
농림부차관	박해상
산업자원부제2차관	이재훈
해양수산부	
차관	이은
해양정책본부연안계획팀장	신연철
행정자치부제1차관	최양식
경찰청장	이택순
농업진흥청장	김인식
산림청장	서승진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입법차장	민동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장윤기